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 | | | | | | | | | |
|---|---|---|---|---|---|---|---|---|---|
| ■ | 일 | 반 | 회 | 계 | | | | | |
| ■ | 등 | 기 | 특 | 별 | 회 | 계 | | | |
| ■ | 사 | 법 | 서 | 비 | 스 | 진 | 흥 | 기 | 금 |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세입세출결산	1
(1) 세입결산	1
(가) 총 괄	1
(나) 일반회계	2
(다) 등기특별회계	3
(2) 세출결산	4
(가) 총 괄	4
(나) 일반회계	5
(다) 등기특별회계	6
(라) 프로그램별 명세	7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10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10
2. 수입지출결산	11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
(가) 수입결산	11
(나) 지출결산	12
(2) 국유재산관리기금	13
3. 재무제표	15

II. 검토의견	17
1. 총괄	17
(1)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심화 개선 필요	17
2. 일반회계	29
《세입》	29
(1) 징계부가금	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
(나) 징계부가금의 방만한 징수·채납 관리 시정 필요	29
《세출》	35
(2) 가족관계등록사무	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5
(나)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필요	36
(3)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4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2
(나) 법관·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사업의 연말 집중 집행 및 과다 불용 문제	42
(4)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4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7
(나) 위탁교육 이수자 중 퇴직자에 대한 환수조치 미흡 문제	47
(다)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	52
(5) 재판절차비용지원	5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5

(나) 진술조력인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제도 운용 실효성 문제	55
(다) 중요 재판 중계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운영 기준 미비	57
(라)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업 간 집행 미구분	63
(마) 송달료 예산의 반복적 이·전용과 관리 체계 미비	70
(6) 사법정책연구개선	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4
(나) 미편성된 일반용역비 사업으로 세목 전용한 문제	74
(다) 법원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과 원가산정 외부 위탁 문제	77
(7) 국선변호료지원	8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8
(나) 국선변호료 지급지원과 집행 관리체계 부재 문제	88
(8) 전문재판운영	9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2
(나) 공사비의 자산취득비 전용 문제	92
(9) 사법업무 전산화	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7
(나) 일반수용비 집행관리 철저 필요	97
(10)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3
(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103
(11) 도서관 운영지원	1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9

(나) 시설 개선 공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업무 내실화 필요	109
(12) 교육원 운영지원	1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4
(나) 상용임금 과소 편성에 따른 연례적 예산 초과집행 문제	114
3. 등기특별회계	119
《세 입》	119
(1) 기타잡수입	1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9
(나)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납부금을 반영하여 예산과 수납액의 불일치 해소 필요	119
(2)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12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4
(나) 유희등기소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 필요	124
《세 출》	129
(3) 등특 기본경비	1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9
(나) 불필요한 예산 전용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29
(4) 등기업무 운영지원	13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3
(나) 인건비 전용 재원을 통한 일반수용비 우회 집행 재발 방지 필요	133
(5)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6
(나) 미래등기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액 불용 사례 재발방지 필요	136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1
《총 괄》	141
(1)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141
《수 입》	145
(2) 기타재산이전수입	1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5
(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개선 필요	145
(다)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148
《지 출》	151
(3) 소송구조지원	1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1
(나)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152
(4)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5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6
(나) 보조사업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집행잔액 관리 미흡	157
(5) 소년보호 등 지원	1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0
(나)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61
(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164
(6) 사법서비스 향상	16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9
(나) 연도말 계약 체결에 따른 이월 부적정	170
(다)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지양 필요	171

【참고자료】

1. 법원 조직도	176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177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179
4. 성과지표 현황	180
5.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181

I . 결산 개요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936억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59억 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36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75.8%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9%인 223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7.1%에 달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2023년	1,168,554	773,190	752,602	—	20,588	64.4
2024년	993,640	775,985	753,648	11	22,325	75.8
증 감 률	△15.0	0.4	0.1	11	8.4	11.4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10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46억 2,6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158억 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886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80.0%임. 미수납액 60억 1,200만원은 주로 징계부과금 및 변상금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자력, 납기미도래 등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610,500	494,626	488,602	11	6,012	80.0%
관유물대여료	3,352	2,878	2,876	—	2	85.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	64	64	—	—	106.0%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	1,103	51	7	1,045	48.6%
변상금및위약금	247	5,475	546	4	4,924	221.1%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6,337	111,930	111,889	—	41	105.2%
면허료및수수료	376,299	372,778	372,777	—	—	99.1%
잡수입	153	395	395	—	—	258.2%
고정자산매각대	—	3	3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
전입금	123,965	—	—	—	—	—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831억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13억 5,9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017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50억 4,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69.2%임. 미수납액 163억 1,300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은평등기소 토지매각대금 중 분납 잔금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383,140	281,359	265,046	—	16,313	69.2%
관유물대여료	292	312	293	—	19	100.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5	681	681	—	—	439.4%
변상금및위약금	—	15	1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7	7	—	—	35.0%
면허료및수수료	307,988	223,913	223,913	—	—	72.7%
잡수입	7	19,014	2,720	—	16,294	38,857.1%
고정자산매각대	954	—	—	—	—	0.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702	518	518	—	—	4.8%
세계잉여금이입액	63,022	36,899	36,899	—	—	58.5%

(2) 세출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2,674억 5,500만원 중 93.0%인 2조 1,08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0.8%인 172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2%인 1,415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206,061	2,219,020	2,027,203	91.9	91.4	19,697	172,120
2024년	2,247,758	2,267,455	2,108,634	93.8	93.0	17,264	141,556
증 감 률	1.9	2.2	4.0	—	—	△12.4	△17.8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8,818억 1,600만원 중 98.8%인 1조 8,58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0.8%인 148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83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75,798	1,785,679	1,762,999	99.3	98.7	17,198	5,481
2024년	1,864,618	1,881,816	1,858,601	99.7	98.8	14,840	8,375
증 감 률	5.0	5.4	5.4	—	—	△13.7	52.98

- 2024년도 대법원 일반회계의 지출률(98.8%)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96.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4년도 전체 일반회계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일반회계	449,526,707	451,560,535	435,430,469	96.8	96.4	1,441,556	14,688,509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1,864,618	1,881,816	1,858,601	99.7	98.8	14,840	8,375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56억 3,900만원 중 64.8%인 2,50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6%인 24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5%인 1,331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30,263	433,341	264,203	61.4	61.0	2,499	166,639
2024년	383,140	385,639	250,033	65.3	64.8	2,424	133,181
증 감 률	△11.0	△11.0	△5.4	—	—	△3.0	△20.1

- 2024년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의 지출률(64.8%)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평균인 91.8%보다 낮은 수준임.

<2024년도 전체 특별회계와 등기특별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특별회계	100,487,496	102,437,144	94,032,482	93.5	91.8	3,012,455	5,392,207
등기 특별회계	383,140	385,639	250,033	65.3	64.8	2,424	133,181

(라) 프로그램별 명세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864,618	1,881,816	1,858,601	99.7%	98.8%	14,840	8,375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4,448	14,448	14,408	99.7%	99.7%	—	39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7,586	7,586	7,313	96.4%	96.4%	—	273
사법행정효율성증진	10,736	10,501	10,355	96.5%	98.6%	87	59
재판청구권 실현	153,106	157,276	156,189	102.0%	99.3%	563	524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2,097	41,773	106.9%	99.2%	3	321
재판일반경비지원	41,610	42,311	41,977	100.9%	99.2%	202	132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2,984	2,567	100.7%	86.0%	358	59
국선번호료지원	69,884	69,884	69,872	100.0%	100.0%	—	12
전문재판운영	3,309	3,331	3,247	98.1%	97.5%	13	71
법원예비금	280	280	280	100.0%	100.0%	—	—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50,144	46,668	92.5%	93.1%	384	3,092
사법업무 전산화	83,633	95,965	81,070	96.9%	84.5%	13,483	1,412
사법업무 전산화	48,980	50,104	48,598	99.2%	97.0%	937	569
전자소송	8,790	13,047	12,542	142.7%	96.1%	—	505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3,278	17,840	11,753	88.5%	65.9%	5,848	239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2,585	14,974	8,177	65.0%	54.6%	6,698	99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8,519	17,934	17,613	95.1%	98.2%	—	320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482	2,469	2,252	90.7%	91.2%	217	—
일반 인건비	1,288,541	1,292,849	1,292,610	100.3%	100.0%	—	239
소속기관 인건비	22,702	21,332	21,318	96.6%	100.0%	—	14
도서관 인건비	6,712	6,537	6,533	97.3%	99.9%	—	4
연수원 인건비	9,019	8,574	8,567	95.0%	99.9%	—	7
교육원 인건비	6,971	6,221	6,218	89.2%	100.0%	—	3
본부 기본경비	80,254	81,010	80,281	100.2%	99.1%	92	637
소속기관 기본경비	4,580	4,739	4,714	102.9%	99.5%	—	22
도서관 기본경비	795	822	817	102.8%	99.4%	—	3
연수원 기본경비	2,170	2,202	2,189	100.9%	99.4%	—	12
교육원 기본경비	1,615	1,715	1,708	105.8%	99.6%	—	7
사법운영지원	123,963	121,955	120,284	100.2%	98.6%	1	1,671
본부운영지원	109,178	106,640	105,342	96.5%	98.8%	1	1,297
도서관운영지원	2,825	2,670	2,668	94.4%	99.9%	—	2
연수원운영지원	8,003	8,382	8,035	100.4%	95.9%	—	348
교육원운영지원	3,957	4,263	4,239	107.1%	99.4%	—	24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83,140	385,639	250,033	69.2%	64.8%	2,424	133,181
등기소 신증축	10,035	12,011	9,609	95.8%	80.0%	2,375	28
등기업무전산화	64,819	64,499	62,876	97.0%	97.5%	—	1,623
등기업무전산화	41,532	41,165	40,557	97.7%	98.5%	—	608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1,752	1,752	1,740	99.3%	99.3%	—	12
미래등기시스템구축	21,535	21,582	20,579	95.6%	95.4%	—	1,003
등특 인건비	128,022	126,459	126,388	98.7%	99.9%	—	71
등특 기본경비	4,273	4,232	4,131	96.7%	97.6%	—	102
등기업무 운영지원	28,954	31,399	30,370	104.9%	96.7%	49	981
등기업무 운영지원	24,561	27,006	26,162	106.5%	96.9%	49	796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393	4,393	4,208	95.8%	95.8%	—	185
예비비	200	200	—	—	—	—	200
일반회계 전출	123,965	123,965	—	—	—	—	123,965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22,872	22,872	16,660	72.8%	72.8%	—	6,212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4회계연도에도 일반회계 예비금 2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 월 액	불 용 액
2023년	280	280	—	—	—	—	280
2024년	280	280	280	100.0	100.0	—	—
증 감 률	—	—	—	—	—	—	—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4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0	200	—	—	—	—	200
2024년	200	200	—	—	—	—	200
증 감 률	—	—	—	—	—	—	—

2. 수입지출결산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액은 2,313억 6,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801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83억 5,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액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231,369	180,183	178,359	14	1,810	77.1%
기타재산수입	—	8	8	—	—	—
변상금	—	2,169	347	14	1,808	—
위약금	—	1	—	—	1	—
가산금	—	1	—	—	1	—
민간출연금	105,636	141,550	141,550	—	—	134.1%
기타경상이전	270	473	473	—	—	175.2%
면허료 및 수수료	—	2	2	—	—	—
여유자금회수	94,281	4,815	4,815	—	—	5.1%
예탁원금회수	—	30,000	30,000	—	—	—
예탁이자수입	1,182	1,164	1,164	—	—	98.5%

(나) 지출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액은 2,313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83억 5,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지출액 (B)	계획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1,369	178,359	77.1%	2,567	2,918
소송구조지원	6,857	6,320	92.2%	—	537
조정제도지원	12,708	11,876	93.5%	—	832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	3,879	3,879	100.0%	—	—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5,490	85.1%	423	537
민원서비스 개선	25,557	25,899	101.3%	87	425
사법서비스향상	13,469	12,762	94.8%	197	534
기금관리비	61	75	123.0%	—	2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365	2,482	104.9%	1,860	—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440	2,389	97.9%	—	5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00	30,000	100.0%	—	—
여유자금운용	127,583	77,187	60.5%	—	—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대법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었던 법원시설 확충사업이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장관 총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대법원 관련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4년도 계획현액 1,122억 3,600만원 중 84.0%인 94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공용재산취득사업(대법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¹⁾.

1)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대법원 관련 주요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액 (A)	지출액 (B)	계획현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1300 공용재산취득 (대법원)	93,620	93,620	18.616	112,236	94,288	84.0%	16,152	1,795
청사시설 취득	28,079	21,944	16,404	38,348	26,755	69.8%	10,802	790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4,237	—	—	—	—	0.0%	—	—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2,595	—	—	—	—	0.0%	—	—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1,100	31,100	950	32,050	32,031	99.9%	19	—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502	—	—	—	—	0.0%	—	—
수원법원 위탁개발	9,419	35,121	—	35,121	35,121	100.0%	—	—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6,975	15	856	871	—	0.0%	15	856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5,440	5,440	403	5,843	381	6.5%	5,316	146
창원가정법원 신축	5,273	—	3	3	—	0.0%	—	3

3.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 제5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하나로서 국회에 제출됨.

2024회계연도 말 대법원 자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8조 9,303억 9,300만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33.7% 증가한 735억 5,200만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8조 8,568억 4,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5,598억 4,200만원임.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1조 9,265억 8,000만원과 비배분비용 29억 4,1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6,472억 6,7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조 8,420억 9,600만원임.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1,421억 3,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6,999억 6,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대법원의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조 7,608억 3,9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조 6,999억 6,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조 8,279억 1,700만원,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281.0% 감소한 -319억 5,300만원임. 기초순자산,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의 합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한 기말순자산은 8조 8,568억 4,100만원임.

〈대법원 소관 회계 재무제표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현황	
				(A-B)	증감률(%)
재정상태표	자 산	8,930,393	8,815,844	114,549	1.3%
	부 채	73,552	55,004	18,548	33.7%
	순자산	8,856,841	8,760,839	96,002	1.1%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59,842	476,375	83,467	17.5%
	재정운영순원가	1,842,096	1,703,453	138,643	8.1%
	재정운영결과	1,699,963	1,602,062	97,901	6.1%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8,760,839	8,577,605	183,234	2.1%
	재정운영결과	1,699,963	1,602,062	97,901	6.1%
	재원 조달 및 이전	1,827,917	1,767,642	60,275	3.4%
	조정항목	△31,953	17,654	△49,607	△281.0%
	기말순자산	8,856,841	8,760,839	96,002	1.1%

※ 각 항목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및 기금의 합계액임.

II. 검토의견

1. 총 괄

(1)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심화 개선 필요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소관별·사업별·대상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²⁾.
-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업 간 또는 예산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고,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내역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의 변경, 세목조정은 같은 목 내에서 세목 간의 변경을 의미함.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근거(이용은 제47조, 전용은 제46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일정한 위임범위 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2)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p. 261~266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비교〉

기능별 성질별 (목-세목)		프로그램(항) X		프로그램 Y
		단위사업(세항) A		단위사업 B
		단위사업 B		단위사업 C
		세부사업(세세항)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전용 (동일 프로그램, 단위사업 간)	이용 (프로그램, 이상 사이)
	실시 설계비 (420-02)	내역변경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전용 (목 간)	
	저장품 매입비 (430-02)	세목조정 (동일 목, 세목 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 263

- 한편,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수입계획액이나 지출계획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고, 기금의 경우 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 없이도 부처가 자체적으로 총 규모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신축성의 범위가 더 넓게 보장됨.

- 최근 3개년 대법원의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기금 운용계획변경 등 국회 예산(기금운용계획 포함) 확정 이후 예산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79억 1,000만원, 2023년 344억 700만원, 2024년 438억 7,3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이·전용 등(A)*	예산 세목조정(B)**	기금운용계획 변경(C)***	계 (A+B+C)
2022회계연도	11,946	5,083	881	17,910
2023회계연도	27,604	6,219	584	34,407
2024회계연도	32,505	9,913	1,455	43,873

주) 예산: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법원행정처 본부에서 시행한 세목조정만 포함)

** 일선관서(법원행정처 본부 이외)에서 시행한 세목조정 일체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시행한 모든 계획변경(내역변경, 세목조정 포함)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구성

- 특히, 대법원의 경우 이와 같은 예산의 변경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기보다는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미흡하여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문제가 있다고 보임.

2024년도 예산 이·전용 등 내역을 살펴보면, ‘고양지원 배상금 지급’과 같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당시에는 미리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가 인건비 부족, 공공요금 부족, 직책수행경비 부족 등 사전에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거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 수요가 미리 정확하게 예측되었어야 하는 경상경비 성격의 비용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와 같은 예산의 변경이 빈번해지는 과정에서 일선 관서에서도 정해진 소관별·사업별·목별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기보다는 세목조정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여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미리 정확하게 반영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 예산 조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이·전용 등 내역〉

(단위: 천 원)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승인 이용	12-18	7001-151-110-01	인건비 부족분	3,012,214	1142-401-210-01	일반수용비	15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2-401-210-07	임차료	15,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2-401-420-03	공사비	3,63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2-401-430-01	자산취득비	287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3-403-420-03	공사비	18,677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3-405-210-01	일반수용비	4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143-405-220-01	국내여비	25,701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253-411-210-08	유류비	11,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253-411-420-03	공사비	19,835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253-411-430-01	자산취득비	535,65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1-300-210-02	공공요금및 제세	6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1-300-210-07	임차료	52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1-300-420-03	공사비	13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1-300-430-01	자산취득비	20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1-302-210-07	임차료	9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00,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210-07	임차료	468,818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210-12	복리후생비	4,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220-01	국내여비	1,5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3-304-210-07	임차료	2,000	일반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3-304-210-15	관리용역비	13,5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3-304-260-01	일반연구비	4,5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11-250-210-14	일반용역비	1,092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11-250-430-01	자산취득비	2,096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11-281-210-08	유류비	14,5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11-291-210-08	유류비	6,9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31-303-210-04	급식비	10,0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31-303-430-01	자산취득비	535,228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31-307-430-01	자산취득비	2,5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31-309-210-08	유류비	500	일반
승인 전용		7001-151-110-01			7031-309-210-15	관리용역비	14,3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220-02	국외업무 여비	3,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1-110-01			1332-303-320-09	고용부담금	8,000	일반
승인 이용		7001-152-110-01			1252-411-210-01	일반수용비	38,937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252-411-210-07	임차료	85,976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252-411-420-03	공사비	18,572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252-411-430-01	자산취득비	284,597	등특
승인 이용	12-18	7001-152-110-01	인건비 부족분	1,937,348	1334-305-210-07	임차료	200,000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334-305-220-02	국외업무 여비	1,800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334-305-420-03	공사비	15,000	등특
승인 이용		7001-152-110-01			1334-305-430-01	자산취득비	150,000	등특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11-271-250-02	직책수행 경비	40,000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210-02	공공요금및 제세	950,000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210-08	유류비	8,474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210-09	시설장비 유지비	9,973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210-15	관리운영비	113,441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420-03	공사비	7,274	등특
승인 전용		7001-152-110-01			7032-311-430-01	자산취득비	13,304	등특
세목 조정	12-18	7001-151-110-02	인건비 부족	550,000	7001-151-110-01	보수	550,000	일반
자체 전용	12-18	7001-151-110-01	인건비 부족	1,369,980	7002-171-110-01	보수	170,88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1			7002-181-110-01	보수	441,56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1			7002-191-110-01	보수	240,76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2			7002-181-110-02	기타직보수	1,19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2			7002-191-110-02	기타직보수	504,30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5			7002-171-110-05	연가보상비	3,98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5			7002-181-110-05	연가보상비	2,280	일반
자체 전용		7001-151-110-05			7002-191-110-05	연가보상비	5,030	일반
세목 조정	12-30	7001-151-110-01	인건비 부족분	600,000	7001-151-110-05	연가보상비	600,000	일반
세목 조정	12-30	7001-152-110-01	인건비 부족분	40,000	7001-152-110-05	연가보상비	40,000	등특
세목 조정	11-19	7001-151-110-02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예산 부족분 자체전용	3,500,000	7001-151-110-01	보수	3,500,000	일반
내역 변경	03-21	7011-281-110-04	인건비 세출예산 내역변경	8,320	7011-250-110-04	일용임금	8,320	일반
내역 변경	03-21	7011-250-110-04	인건비 세출예산 내역변경(착오수정)	8,320	7011-281-110-04	일용임금	8,320	일반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자체 전용	10-27	7032-311-210-12	공무직근로자 맞춤형복지비 부족분	594	7011-271-210-12	복리후생비	594	등특
내역 변경	10-27	7031-309-210-12	공무직근로자 맞춤형복지비 부족분	209	7031-303-210-12	복리후생비	209	일반
자체 전용	10-28	7011-250-210-12	본부 기본경비 내 맞춤형복지비 부족분	32,000	7031-303-210-12	복리후생비	32,000	일반
내역 변경	12-03	7031-309-110-03	교육원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62,851	7031-303-110-03	상용임금	60,289	일반
내역 변경		7031-309-320-09			7031-303-320-09	고용부담금	2,562	일반
내역 변경	12-27	7031-308-110-03	상용임금 부족분	82,000	7031-303-110-03	상용임금	57,000	일반
내역 변경		7031-309-110-03			7031-303-110-03	상용임금	25,000	일반
자체 전용	12-30	7031-303-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694,000	7001-151-110-05	연가보상비	74,000	일반
자체 전용		7031-303-320-09			7031-303-110-03	상용임금	610,000	일반
자체 전용		7031-303-320-09			7031-303-110-04	일용임금	10,000	일반
자체 전용	09-12	7031-303-210-02	공공요금 부족분	3,000,000	7031-303-110-03	상용임금	3,000,000	일반
세목 조정	10-31	7031-303-210-02	공공요금 부족분	1,100,000	7031-303-210-08	유류비	1,100,000	일반
내역 변경	09-12	7031-309-210-02	교육원 공공요금 부족분	134,692	7031-3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34,692	일반
자체 전용	09-13	7011-271-210-02	공공요금 부족분	13,208	7031-3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3,208	일반
내역 변경	09-13	7031-308-210-02	공공요금 부족분	165,226	7031-3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65,226	일반
자체 이용	11-08	1143-403-210-02	공공요금 부족분	4,000,000	7011-250-430-01	자산취득비	1,557	일반
자체 이용		1143-403-210-02			7031-303-420-03	공사비	302,468	일반
자체 이용		1143-403-210-02			7031-303-430-01	자산취득비	1,220,291	일반
자체 이용		1143-403-210-02			1253-411-420-03	공사비	293,892	일반
자체 이용		1143-403-210-02			1253-411-430-01	자산취득비	1,281,792	일반
자체 이용		7031-303-210-02			1253-411-430-01	자산취득비	900,000	일반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자체 전용	11-08	7032-311-210-02	등특 공공요금 부족분	3,500,000	7001-152-110-01	보수	3,500,000	등특
세목 조정	05-29	1143-403-210-01	울산가정법원 공공요금 연액 오배정	39,889	1143-4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39,889	일반
세목 조정	12-24	7011-271-210-01	운영비 부족분	221,171	7011-271-210-05	특근매식비	6,279	등특
세목 조정		7011-271-210-01			7011-271-210-12	복리후생비	14,380	등특
세목 조정		7032-311-210-01			7032-311-210-05	특근매식비	11,049	등특
세목 조정		7032-311-210-01			7032-311-210-07	임차료	6,234	등특
세목 조정		7011-250-210-01			7011-250-210-05	특근매식비	29,276	일반
세목 조정		7011-250-210-01			7011-250-210-07	임차료	18,156	일반
세목 조정		7011-250-210-01			7011-250-210-12	복리후생비	100,911	일반
세목 조정		7011-250-210-01			7011-250-210-15	관리용역비	4,595	일반
세목 조정		1143-404-210-01			1143-404-210-05	특근매식비	30,291	일반
세목 조정	01-14	7031-303-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1,200	7031-303-210-14	일반용역비	1,200	일반
세목 조정	11-08	7032-311-210-01	운영비 부족분	508,303	7032-311-210-02	공공요금및 제세	508,303	등특
세목 조정	11-12	7032-311-210-01	운영비 부족분	111,775	7032-311-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11,775	등특
세목 조정	12-30	7031-303-210-01	각급법원 운영비 부족분	170,000	7031-303-210-02	공공요금및 제세	170,000	일반
자체 전용	11-20	7011-271-210-16	각급법원 등기특별회계 기타운영비(과운영비) 부족분	13,000	7011-271-250-02	직책수행 경비	13,000	등특
세목 조정	11-20	7011-250-210-16	시험관리수당, 각급법원 과운영비 부족분	72,333	7011-250-210-09	시설장비 유지비	72,333	일반
세목 조정	11-27	7011-250-210-16	기타운영비 부족분	116,116	7011-250-210-06	일 · 숙직비	55,000	일반
세목 조정		7011-250-210-16			7011-250-210-14	일반용역비	19,500	일반

이전응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세목 조정		7011-250-210-16			7011-250-210-07	임차료	41,616	일반
세목 조정	11-27	7011-250-210-16	기타운영비 부족분	5,564	7011-250-210-07	임차료	5,564	일반
내역 변경	02-27	7011-271-220-01	소속기관(법원도서관) 국내여비 부족분에 따른 내역변경	15,000	7011-250-220-01	국내여비	15,000	일반
자체 전용	08-22	7011-250-220-01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출장비) 부족분	500,000	7031-303-210-04	급식비	500,000	일반
내역 변경	08-22	7011-291-220-01	교육원 기본경비 출장비 부족분	43,000	7011-250-220-01	국내여비	43,000	일반
내역 변경	08-22	7011-281-220-01	사법연수원 국내여비(출장비) 부족분	75,000	7011-250-220-01	국내여비	75,000	일반
자체 전용	10-31	7011-250-220-01	24년 하반기 근무지변경에 따른 이전비 부족분	150,000	7031-303-220-01	국내여비	150,000	일반
자체 전용	11-11	7011-250-220-01	국내여비(출장비) 부족분	106,164	7031-303-220-01	국내여비	6,164	일반
자체 전용		7011-250-220-01			7031-303-210-09	시설장비 유지비	100,000	일반
자체 전용	12-09	7011-291-220-01	법원공무원 교육원 국내여비 부족분	52,128	7031-309-210-01	일반수용비	52,128	일반
자체 전용	12-09	7011-281-220-01	사법연수원 국내여비(출장비) 부족분	10,000	7011-281-210-16	기타운영비	10,000	일반
자체 전용	12-10	7011-271-220-01	등특 국내여비 부족분	17,630	7011-271-250-02	직책수행 경비	17,630	등특
자체 전용	12-16	7011-250-220-01	각급법원 국내여비(출장비) 부족분	130,000	7031-303-210-04	급식비	50,000	일반
자체 전용		7011-250-220-01			7011-250-250-02	직책수행 경비	80,000	일반
내역 변경	11-04	7011-250-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5,100	7011-271-250-02	직책수행 경비	5,100	일반
내역 변경	11-04	7011-250-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29,800	7011-281-250-02	직책수행 경비	29,800	일반
내역 변경	11-04	7011-291-250-02	법원공무원 교육원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5,599	7011-250-250-02	직책수행 경비	5,599	일반
자체 전용	11-06	7011-250-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100,000	7011-250-210-09	시설장비 유지비	100,000	일반
승인 전용	08-08	1143-404-240-01	사업추진비(재판업무지원비) 부족	460,000	1142-401-420-03	공사비	150,000	일반
승인 전용		1143-404-240-01			1143-403-420-03	공사비	310,000	일반
내역 변경	06-25	7011-271-240-02	도서관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2,000	7011-250-240-02	관서업무 추진비	2,000	일반

이전용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자체 전용	04-12	1144-407-430-01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부족	18,467	1144-407-420-03	공사비	18,467	일반
자체 전용	05-03	1142-401-430-01	의무실 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부족분	415	1142-401-420-03	공사비	415	일반
세목 조정	11-11	7031-303-210-03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부족분	10,000	7031-303-210-04	급식비	10,000	일반
세목 조정	11-19	7031-303-210-03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부족분	20,000	7031-303-210-04	급식비	20,000	일반
세목 조정	09-17	1253-411-210-07	청사 비데 임차료(속초지원 면적 증가분)배정에 따른 관사임차료 부족분	4,279	1253-411-210-01	일반수용비	4,279	일반
세목 조정	12-26	1253-411-210-09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대기배출저감장치 설치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2,000	1253-411-210-07	임차료	2,000	일반
내역 변경	10-22	1331-300-210-15	정보화 사업 관리용역비 통합발주로 인한 관리용역비 내역변경	4,792,000	1331-303-210-15	관리용역비	445,000	일반
내역 변경		1331-302-210-15			1331-303-210-15	관리용역비	4,347,000	일반
자체 전용	12-29	1333-304-260-01	법원전자도서관(정보화) 사업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 부족으로 인한 내역변경	6,683	1331-300-260-01	일반연구비	4,720	일반
자체 전용		1333-304-210-15			1331-300-210-15	관리용역비	1,963	일반
세목 조정	12-06	7011-250-210-16	기타운영비(출산직원 지원, 시험관리수당)부족분	8,000	7011-250-210-01	일반수용비	8,000	일반
내역 변경	11-01	7011-291-250-03	법원공무원 교육원 재판자료조사수집비 부족분	6,503	7011-250-250-03	특정업무 경비	6,503	일반
자체 전용	11-01	7031-307-250-03	법원도서관 재판자료조사수집비 부족분	5,488	7011-250-250-03	특정업무 경비	5,488	일반
자체 전용	03-08	7031-303-310-02	고양지원 배상금 지급	333,195	7031-303-210-08	유류비	333,195	일반
자체 전용	10-15	7031-303-310-02	부산지법 2023구합22307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발생	4,616	7031-303-210-04	급식비	4,616	일반
자체 전용	11-28	7031-303-310-02	2022구합84406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	6,299	7031-303-430-01	자산취득비	6,299	일반
자체 전용	11-28	7031-303-310-02	2022구합84406 불합격처분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족분	2	7031-303-430-01	자산취득비	2	일반
승인 전용	11-13	1143-404-320-06	구호 및 교정비 부족분	155,000	1143-403-420-03	공사비	100,000	일반
승인 전용		1143-404-320-06			1143-403-430-01	자산취득비	55,000	일반

이전응받은 사업					재원			비고 (회계)
구분	일자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세목 조정	11-13	1253-411- 420-02	실시설계비 부족분	30,282	1253-411- 420-03	공사비	30,282	일반
세목 조정	03-17	1252-411- 420-03	수원통합등기소 공사비 부족분	23,273	1252-411- 420-04	감리비	23,273	등특
내역 변경	06-04	7031-308- 420-03	국유재산의 증감을 수반하는 공사를 위하여 청사관리권한이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내역변경	157,000	7031-307- 420-03	공사비	157,000	일반
내역 변경	08-27	7031-309- 420-03	법원공무원 교육원 공사비 부족분	150,000	7031-303- 420-03	공사비	150,000	일반
합계				32,505,236	합계		32,505,236	

주: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법원행정처 본부에서 시행한 세목조정만 포함)을 합산
자료: 대법원 제출

2.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가금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징계부가금(56-564)은 법령에 따라 수납하여야 할 징계부가금을 수납하는 수입항목으로, 2024년도 세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10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00만원이 수납되고, 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0억 4,500만원은 미수납됨.

〈2024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계부가금	-	1,062	11	1,045	7

(나) 징계부가금의 방만한 징수·체납 관리 시정 필요

-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함.
- 최근 5개년 징계부가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년 징계

부가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매년 일정 규모의 징수결정액은 발생하고 있음.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0.6%, 2021년 0.9%, 2022년 4.4%, 2023년 0.0%, 2024년 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최근 5개년 징계부가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0	—	2,375	15	—	0.6	2,361	—
2021	—	1,110	10	—	0.9	1,100	—
2022	—	1,109	49	—	4.4	1,060	—
2023	—	1,060	—	—	0.0	1,060	—
2024	—	1,062	11	—	1.0	1,045	7

주) 반올림으로 인해 총액과 개별 수치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2024년 징수결정액 10억 6,200만원의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부과건 중 1건(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고, 2016년 부과건 중 1건(953만 7천원)과 2024년 부과건 중 1건(100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나머지(총 9건)는 모두 미수납된 상황임.

〈2024년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 현황〉

납부 의무자	소속	직위	징계부가금 결정일	징수결정액 (천원)	수납액 (천원)	불납결손액 (천원)
김OO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2016.02.23.	7,000	—	7,000
김OO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서기	2016.03.31.	39,750	—	—
박OO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서기보	2016.04.06.	69,730	—	—
윤OO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2016.05.01.	9,537	9,537	—
강OO	대구지방법원	행정주사보	2016.06.27.	18,000	—	—
손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05.	297,580	—	—
강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25.	283,190	—	—
이OO	법원행정처	전산주사	2019.06.25.	5,500	—	—
김OO	광주지방법원	법원서기	2020.08.10.	30,000	—	—
최OO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2020.09.22.	300,000	—	—
이OO	대구고등법원	보안관리서기	2024.12.26.	1,000	1,000	—
이OO	대구지방법원	일반임기제	2024.12.30.	1,000	—	—
합 계				1,062,287	10,537	7,000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정리

-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 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³⁾인데, 대법원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일부 건들을 제외하면 거의 수납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법원이 2024년에 2016년 부과건 중 1건(700만원)을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2016. 3. 4. 징계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달한 후 2016. 6. 2. 전주세무서에 징계부가금 징수의뢰를 1차 요구하고, 2022. 8. 19. 전주세무서에 징계부가금 2차 징수의뢰를 하였으나 2022. 8. 25. 전주세무서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수탁 반려 회신을 받음.

< 2024년도 불납결손처리 건 경과 >

일자	내용
2016. 2. 18.	광주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 파면, 징계부가금 7,000,000원
2016. 2. 23.	징수요청 및 수입 징수결의
2016. 2. 24.	징계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 송달 실시
2016. 3. 4.	징계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 송달 완료
2016. 6. 2.	전주세무서에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 공문 송달
2022. 8. 19.	전주세무서에 징계부가금 징수 재의뢰 공문 송달
2022. 8. 25.	전주세무서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수탁 반려 회신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3)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 2022」, 60p.

이 건의 경우 2016. 2. 23. 징수 결의를 하고 2016. 2. 24. 징계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달 실시하여 2016. 3. 4. 송달 완료하였음. 그로부터 60일⁴⁾이 경과한 2016. 5. 5.을 기산점으로 하여 2021. 5. 6. 「국가재정법」 제95조⁵⁾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간과하고 2022. 8. 19. 전주세무서에 징계부가금 2차 징수의뢰를 하였고, 2022. 8. 25. 전주세무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 및 채납 방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4)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5)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설령 2022. 8. 25. 전주세무서의 수탁 반려 회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이르러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등 국가 재정 및 회계 관리 임무 또한 해태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방만한 징계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시정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5조⁶⁾에 따라 2025. 7. 1.부터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계관리금 관리대장의 의무적 작성 및 전산화 도입 등을 포함하여 징계부가금의 징수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공무원 징계령」 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추 두어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세 출》

(2) 가족관계등록사무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는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144억 4,800만원이며, 이 중 144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주요 내역사업인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국민의 신분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1억 9,300만원이 전액 집행⁷⁾되었음.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관계등록사무	14,448	—	—	14,448	14,409	—	39
자치단체경상보조	14,193	—	—	14,193	14,193 [13,837]	—	—

7) 다만, 보조금을 배분을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실집행액은 138억 3,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97.49%임.

(나)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관 사무인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고, 국가사무 수행에 대한 경상적 경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⁹⁾.

2024년 대법원은 각 시·구·읍·면 가족관계 등록관서의 보조금 교부 신청¹⁰⁾에 따라 57개 감독법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감독법원은 이를 229개의 시·군·구에 배분하였으며, 해당 시·군·구는 보조금을 다시 1,572개의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재배분하였음.

-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이를 법령에 맞게 사용한 뒤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함¹¹⁾.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

- 2024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590만원, 이자 4,573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합 4억 원을 등록관서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임.

그리고, 반환예정액 4억 원은 2025회계연도에 대법원 일반회계 수입¹²⁾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될 예정임.

〈2024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반환예정액
14,193	13,837	356	46	400

- 그런데,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 발생 현황에 대해 시·군·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간 이자 발생액 편차가 다소 큰 측면이 있음.

이자 발생액이 많은 곳은 1백만원 이상 발생하는 등 배정액 대비 이자액 비율이 높은 반면, 이자가 적게 발생한 곳은 단지 몇 천원 또는 몇 백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침.

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보조금 반환액’은 대법원 일반회계(세입) 세부사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에, ‘보조금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에 포함됨.

〈2024회계연도 시·군·구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 비교〉

(단위: 원)

보조금 이자가 <u>많이</u> 발생한 시군구			보조금 이자가 <u>적게</u> 발생한 시군구		
시군구	보조금 배정액	이자	시군구	보조금 배정액	이자
서울시 A구	88,781,000	1,256,910	서울시 F구	67,824,000	3,346
서울시 B구	129,735,000	1,441,870	대전시 G구	123,821,000	3,780
서울시 C구	104,119,000	1,261,620	강원도 H군	32,703,000	130
인천시 D구	110,159,000	1,096,110	경상북도 I군	40,306,000	850
서울시 E구	77,407,000	960,400	전라북도 J군	44,006,000	1,720

자료 : 대법원 제출

예컨대, 서울특별시 F구의 보조금을 살펴보면, 비슷한 규모(약 7,000만원)의 배정액을 받은 서울특별시 E구의 이자액 96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3천원의 이자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F구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배정액 6,779만원을 보조금을 배정받은 연초(1월)에 전액 사용한 것이 아니라¹³⁾ 연중 배분해서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 이자가 다른 시·군·구와 달리 소액(3,346원)일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임¹⁴⁾.

13)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은 2024년 1월 중 1회 배정되었음.

14) 대법원은 서울시 F구 이자액에 대하여 재산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임.

〈2024회계연도 서울시 중구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월별	일반 운영비	여비	급량비	기타 운영비	업무추진비	합 계
1월	-	-	-	-	450	450
2월	-	-	-	-	450	450
3월	-	-	-	271	1,000	1,271
4월	20,268	-	-	-	550	20,818
5월	3,872	-	-	-	-	3,872
6월	600	-	-	-	550	1,150
7월	263	-	-	-	1,000	1,264
8월	243	-	-	-	500	743
9월	30,065	-	-	-	500	30,565
10월	3,418	-	-	-	-	3,418
11월	1,521	-	-	-	500	2,021
12월	1,274	-	-	-	500	1,774
소 계	61,524	-	-	271	6,000	67,795

자료 : 대법원 제출

보조금 이자를 부정확하게 추계하면,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하는 한편, 대법원의 예·결산상 수입액이 감소하여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보조금 이자가 적게 추계되는 등록관서에 대해 그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등록관서별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조금 관련 법령은 다른 회계와 금액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¹⁵⁾, 「2024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에서도 보조사업자인 각 등록관서가 별도 계정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한 곳은 229개 시·군·구 중 45곳으로, 약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다른 재정이나 보조금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①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② 보조금 관련 집행액·잔액·이자액 등 보조금 금액의 관리가 부정확해질 수 있고, ③ 은행의 자동화된 회계 시스템이 아닌 담당 직원이 직접 이자 등을 계산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도 낮아질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일부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보조금 이자가 적게 추계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관서의 보조금 별도 계정 사용률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선진 사법이론, 외국 판례 및 제도 연구와 이해를 통해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국제화를 촉진하며, 외국과의 사법 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75억 8,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3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586	—	—	7,586	7,313	—	273

(나) 법관·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사업의 연말 집중 집행 및 과다 불용 문제

- 내역사업인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및 ‘법관 단기국외훈련’ 사업은 법원공무원 및 각급 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법 선진국의 제도, 판례, 운영사례 등을 단기간 동안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각각 1억 6,800만원, 2억 900만원으로 총 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각각 7,400만원, 9,400만원이 불용되어 두 사업 모두에서 전체 예산의 약 45%가량이 집행되지 않음.

〈2024년도 단기국외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586	—	—	7,586	7,313	—	273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	—	168	94	—	74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	—	209	115	—	94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두 내역사업의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됨.

첫째, 대법원은 단기국외훈련의 불용 사유로 ‘계엄 정국에 따른 출장 축소 결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으로, 회계연도의 마지막 한 달에 해당하는 사안임.

단기국외훈련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관 섭외 등 일정한 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 특성상 반드시 연말에 집중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할 것임.

특히 그 이전인 1~11월을 통틀어도 예산 집행률이 55%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외부 변수 외에 계획 수립 및 일정 운영 방식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둘째, 대법원에서 제출한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상당수의 국외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됨.

〈2024년도 단기국외훈련 집행 실적 세부 내역〉

구분	국제화연수 종류	인원	교육 기간	파견국가	집행액(원)
1	가사소년 전문법관 국제화연수	2	2024.10.17. - 10.25.	미국 (로스엔젤레스)	17,548,660
2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2. - 12.30.	스페인	7,208,870
3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2. - 12.30.	일본	5,762,200
4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0.7. - 10.15.	미국(LA)	8,000,000
5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6. - 12.14.	포르투갈	8,000,000
6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1. - 12.9.	스위스, 오스트리아	7,579,880
7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3. - 12.31.	미국(LA)	5,663,000
8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프랑스, 영국	6,791,350
9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31.	프랑스, 영국	5,043,140
10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5. - 12.12.	싱가포르	5,618,330
11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스페인, 포르투갈	8,000,000
12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1.8. - 11.16.	미국(뉴욕, 워싱턴DC)	8,000,000
13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3. - 12.31.	미국(샌프란시 스코)	7,280,540

구분	국제화연수 종류	인원	교육 기간	파견국가	집행액(원)
14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0. - 12.28.	스페인	5,858,550
15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취소	이탈리아, 스위스	1,587,610 (취소수수료)
16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14. - 12.21.	호주	4,506,590
17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3. - 12.31.	튀르키예	5,904,520
18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1.24. - 12.2.	스페인	5,543,800
19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3. - 12.11.	대만	4,433,140
20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3. - 12.11.	이집트	5,451,860
21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9.28. - 10.6.	독일	8,000,000
22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싱가포르	4,464,490
23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싱가포르, 대만	6,844,950
24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호주	5,685,890
25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호주	6,782,130
26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미국	5,692,120
27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스페인	7,957,720
28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싱가포르	7,099,230
29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태국	4,161,920
30	법관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1	2024.12.21. - 12.29.	호주	3,763,650

자료: 대법원 제출

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건 중 12월을 제외한 시기에 시행된 사례는 4건(1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12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11월까지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2월에 편중된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 속에서 돌발적인 정국 상황을 불용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사후적 설명에 불과하며, 특히 동일 시점에도 복수의 해외 연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이와 같은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장 시기 및 예산 집행 계획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법원행정의 전산화, 사법 정보 통계분석, 법정언행컨설팅, 위탁교육, 산업안전보건, 법원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105억 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3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736	84	△319	10,501	10,355	87	59

(나) 위탁교육 이수자 중 퇴직자에 대한 환수조치 미흡 문제

-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법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위탁교육, 연수, 제도개선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에는 동 내역사업에 1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8,400만원과 타 세부사업으로 이전용된 1억 6,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6억 9,700만원으로, 이 중 15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8,7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736	84	△319	10,501	10,355	87	59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1,778	84	△165	1,697	1,552	87	58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대법원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국내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국과장 교육,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이 있으며, 해당 과정에는 교육비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됨.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¹⁶⁾에 따르면,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계속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차이가 있음.

16)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제20조(복무의무) ① 법원행정처장은 훈련이수자(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로 하여금 1년부터 6년까지의 기간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위탁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국내위탁교육과정	의무복무기간
사이버학사과정	1년
국내외국어연수과정(주간)	1년
국과장교육	1년
석사과정	3년
디지털포렌식	3년
법학전문대학	6년
전문과정	없음

자료: 대법원 제출

- 위탁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교육 도중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기간 중 면직된 경우, 또는 연수 종료 이후 정해진 복무의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¹⁷⁾

교육비의 환수는 인사담당부서에 환수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 파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재무부서가 교육비 반납을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2회 이상 송달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은 국가채권집행절차에 따라 환수대상자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 등) 획득을 위한 민사

17)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제1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게 됨.

- 그러나 최근 5개년간 위탁교육 대상자 명단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예컨대, 2022년 KAIST 석사과정에 입학한 甲 대상자는 약 9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2025년 2월 명예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乙 대상자는 디지털 포렌식과정을 위한 교육비 약 3,9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교육기간 도래 전에 의원면직¹⁸⁾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환수 실적이 없는 상태임.

〈환수 미조치 현황〉

구 분	직 급	교육기간	의무 복무 기간	의무위반사유 (일자)	환수여부(금액)
KAIST 석사과정	지법부장	2022-03-01 ~ 2024-02-29	3년	퇴직 (2025-02-24)	X (환수조치 중) (9,000,000원)
디지털 포렌식과정	지법부장	2023-03-01 ~ 2025-02-28	3년	퇴직 (2025-02-24)	X (환수조치 중) (39,000,000원)

자료: 대법원 제출

- 이러한 사례들은 위탁교육 경비 환수 체계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신뢰성, 나아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보임.

18)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사의표시만으로는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됨(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특히 현행 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환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확인된 사례는 환수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통해 퇴직하였거나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의사로 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환수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전 조치 없이 명예퇴직 승인이 이뤄지고 교육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비용 환수 없이 임용권자의 의원면직 승인이 이뤄진 사례임.

명예퇴직은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환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승인한 것은 행정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전혀 채우지 않고 교육 중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승인한 것 역시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환수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고, 장기간 송달불능 등으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리 등의 정리 방안도 병행 검토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 승인 절차와 연계하여, 교육비 환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승인을 보류하거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상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

- 법정언행컨설팅은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재판 중 언행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심층 컨설팅 사업임.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약 1억 7,000만원(66.1%)이 집행되었고 8,7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33.9%)되었음.

- 동 사업은 단일 계약을 통해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 컨설팅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나,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법정언행컨설팅 집행일정(동일 회계연도 내 완료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언행 컨설팅 대상자 파악요청 공문 실시 ●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언행 컨설팅 희망 법관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

- 법정언행 컨설팅 제외 희망 법관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4월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대상자 재판 동영상 촬영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사업자 선정 절차 준비 ⇨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입찰공고 의뢰 준비
- 5월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 실시
- 6월
 - 사업자 제안평가회 개최 및 용역 계약 체결
 -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 실시
- 7월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일정 등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 동영상 송부 등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8월
 -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 대상 법관 법정 방청 및 1차 컨설팅 실시(~ 9월)
- 9월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동영상 2차 촬영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장소 등 협조 요청 공문 실시(서울고등법원)
- 10월
 -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 대상 법관 2차 컨설팅 실시(~ 11월)
 - 대상 법관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 11월
 - 대상 법관 2차 컨설팅 계속 실시
- 12월
 - 사업자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
 -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내부 결재 공문 실시
 - 법정언행 컨설팅 예산 집행 요청 공문 실시

자료: 대법원 제출

〈법정언행컨설팅 연도별 예산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
2021	143	69	212	141	70	1	66.5
2022	123	70	193	133	60	—	68.9
2023	173	60	233	144	84	5	61.8
2024	173	84	257	170	87	—	66.1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2022년 동 사업에 대한 평가 시 연속적인 이월 발생에 대해 ‘2023년에는 조기에 절차를 개시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동일하게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당초 대법원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 여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일정 지연의 사유로서 제시되었으나, 2022년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의 이월이 지속된 것은 더 이상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¹⁹⁾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²⁰⁾

- 따라서 대법원은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에 대해 반복적 이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4, p.16

(5) 재판절차비용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사업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인신의 자유 침해 상황에서의 구제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 보장 및 재판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420억 9,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17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18	2,616	42,097	41,773	3	321

(나) 진술조력인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제도 운용 실효성 문제

-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및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기 위한 진술조력인²¹⁾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900만원(30.0%)에 불과하고, 2,100만원(70.0%)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18	2,616	42,097	41,775	3	319
진술조력인 제도	30	—	—	30	9	—	21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동 사업은 2021년 및 2022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2023년 및 2024년에는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3년부터는 지원 건수가 증가하여 2024년에는 총 73건이 집행되었으나, 여전히 예산의 70%가 불용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인 미비점이 지속되고 있음.

21) 진술조력인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진술조력인 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원건수		기준금액 (1건당)	집행률(%)	불용액
			사건수	소송 관계인수			
2021	50	2	18	19	30만원	4.0	48
2022	50	5	23	24	30만원	10.0	45
2023	30	7.8	64	71	30만원	26.0	22.2
2024	30	9	73	78	30만원	30.0	21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보다 지원 건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예산 3,000만원 중 실제로 집행된 건은 73건에 불과하고, 1건당 수당 기준이 30만원²²⁾임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는 2,190만 원이 집행되어야 하나 실제 집행액은 900만원에 그침.

22)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있고, 재판장이 일정 요건에 따라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진술조력인 제도 수당지급기준 (자료 : 대법원)〉

증인신문 출석 여부	구분	유형	기준	금액(원)
출석	기본수당	증인신문기일 참석하여 진술		300,000
	증액수당	증인 수 1인 초과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수당액의 50% 범위 내 증액 지급	150,000
		사전협의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출석 횟수 1회 이상	출석하는 매 회 기본수당액의 30% 범위 내 증액 지급	90,000
		증인신문기일 출석 횟수 1회 초과	초과하는 매 회 기본수당액의 50% 범위 내 증액 지급	150,000
		진술조력인의 특별한 노력 인정	기본수당액의 100% 범위 내 증액 지급	300,000
출석×	감액	증인신문기일 참여 전 선정취소	기본수당액의 50% 범위 내 감액 지급	150,000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술조력인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²³⁾되는데, 이 중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는 ‘보수’를,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²⁴⁾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을 지급하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동 사업의 예산을 정확한 산출 근거를 통해 편성하여야 함에도, 현재 진술조력인 선정을 위한 대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서는 전체 진술조력인 선정 건수 중 상근/비상근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체 선정 건수 중 몇 건에 대해 동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상근·비상근 구분에 따른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②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23)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체 진술조력인은 180명으로, 그 중 상근 진술조력인은 13명, 나머지는 비상근진술조력인임.

24)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수당 및 활동) ①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 중요 재판 중계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운영 기준 미비

- 내역사업인 “중요재판중계운영” 사업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등 중요 재판을 생중계하는 사업임.

〈2024년도 중요재판중계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18	2,616	42,097	41,775	3	319
중요재판중계운영	140	—	—	140	119	3	18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2024년도에는 총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약 1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2024년 12월 중 납품 예정이었던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재고 부족으로 제때 납품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장비 구매 미이행에 따른 것이고, 불용액 1,800만원은 예산 편성 당시 대법원이 공개변론 생중계를 연간 3건 이상 실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건만 시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중요 재판 중계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21~2024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제 중계 건수
2021	1억원	12,980,000원	13.0	변론 1건, 선고 24건(11회)
2022	1억 5,000만원	95,382,660원	63.6	변론 1건, 선고 16건(9회)
2023	1억 5,000만원	96,137,842원	64.1	변론 0건, 선고 9건(5회)
2024	1억 4,000만원	99,663,440원	71.2	변론 1건, 선고 13건(5회)

주) 결산 내역상 집행액(1억 1,900만원)과 다른 이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해석됨.

자료: 대법원 제출

○ 최근 4년간 예산 집행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매년 3,000만원 이상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의 핵심인 중계 실적 역시 매년 5~11회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2023년에는 변론기일 중계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에도 총 5회에 그치는 등 예산 집행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동 사업은 이미 2022년도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 부진을 이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국회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중계사업의 실효집행률이 최근 3년간 15%를 넘지 못한 점, 2021년도에도 편성액 1억원 중 1,300만원(13.0%)만이 집행된 점을 근거로 반복된 집행 부진을 문제삼은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전히 과도한 중계 횟수를 기준으로 편성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억 1,900만원의 집행액 중 자산취득비(영상 장비 등)가 5,100만원, 공사비(설비 구축 등)가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8%가 초기 고정투자에 해당되는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성 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2024년도 중요 재판 중계 항목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별 개요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중요재판중계운영	140	—	—	140	119	3	18
일반수용비 (210-01)	39	—	—	39	25	—	1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	—	6	6	—	—
사업추진비 (240-01)	10	—	—	10	8	—	2
공사비 (420-03)	30	—	—	30	29	—	1
자산취득비 (430-01)	55	—	—	55	51	3	1

자료: 대법원 제출

- 위와 같이 중계 실적에 비해 고정비성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행 계획이 부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특히 장비 구비나 설비 구축 등 고정비 항목이 실제 중계 실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환류 없이 매년 유사한 규모로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구조로 인해 예산 규모와 실적

간의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4년에는 동 사업에 사업추진비(240-01)가 1,000만원 편성되어 그 중 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중요 재판 중계 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계 송출이 주된 목적으로, 사업 성격상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음.

- 한편, 현행 재판 중계의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마다 중계 횟수나 사건의 종류, 중계 범위 등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생중계 대상 재판의 성격, 사회적 관심도,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공식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집행 지침이 없는 상황임²⁵⁾.

- 따라서 대법원은 ① 연간 중계 계획 수립 시 현실적 예측치를 반영하고, ② 장비 구매 등 고정비 항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며, ③ 중계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침을 제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5) 참고로, 방청인의 법정에서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음.

(라)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업 간 집행 미구분

- 내역사업인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 방음·차폐·영상장비 등을 갖춘 별도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²⁶⁾ 등에 따라, 영상장치를 활용한 분리신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1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9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18	2,616	42,097	41,775	3	319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1,918	418	△410	1,926	1,920	—	6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2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그런데 2024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19억 1,800만원 중 증인 지원실 신설을 위한 예산은 1억 7,800만원²⁷⁾인데, 실제 증인지원실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제주지방법원(4,360만원), 평택지원(3,592만원) 등 2개소 총 7,952만원(4.1%)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액인 4억 1,800만 원은 (구)구리등기소에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데 집행되었으며, 4억 1,000만원은 타 사업의 인건비, 사업추진비로 이·전용되는 등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법 원	면 적	집행액	내역	비고
2024	제주지방법원	22.5㎡	43,600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매	
	평택지원	19.86㎡	35,926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매	

자료: 대법원 제출

〈이월 예산(4억 1,800만원)의 2024년도 집행 내역〉

(단위: 원)

집행내역	집행	비고
광역면접교섭센터 (구)구리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320,632,730	설치완료
광역면접교섭센터 (구)구리등기소 리모델링 관급자재 구매	97,436,540	
합계	418,069,270	

자료: 대법원 제출

27) ① 증인지원실 신설 예산 1억 7,800만원(검찰 측 증인지원실 신설 6,100만원, 피고인 측 증인지원실 신설 6,100만원, 아동학대관련 증인지원실 신설 5,600만원), ② 증인지원실 운영비 예산 1억 5,800만원, ③ 면접교섭센터 설치 예산 15억 8,300만원

〈2024년도 이·전용된 4억 1,000만원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승인전용 (2024.8.8.)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310	재판일반 경비지원	사업추진비 240-01	310
승인전용 (2024.11.13.)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100	재판일반 경비지원	구호및교정비 320-06	100

자료: 대법원 제출

〈2021~2024년 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법 원	면 적	예산 사용액	내역	비고
2021	부천지원	34㎡	80,570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전기 공사, 비품 기타	
	천안지원	31.19㎡, 26.82㎡	13,578	CCTV 설치, 내부 가구 및 집기 배치, 비상벨 설치, 각종 안내문, 배너 제작 설치	2개
	여주지원	20.85㎡	31,681	자동문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CCTV 설치, 쇼파 및 테이블 구입	
2022	청주지방법원	21.45㎡	14,687	인테리어 공사, 비품 구입	
	속초지원	20.1㎡, 19.28㎡, 23.41㎡, 19.8㎡	27,100	CCTV 설치, 인테리어 공사, 출입통제 시설	일반/ 특별/ 화상증인지원 실 각 1개소 및 대기실
2023	전주지방법원	96.68㎡	39,874	CCTV 설치, 내부 가구 및 집기 배치, 비상벨 설치, 각종 안내문, 배너 제작 설치	
2024	제주지방법원	22.5㎡	43,600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매	
	평택지원	19.86㎡	35,926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매	

자료: 대법원 제출

- 위 표에서 보듯 최근 4년간 증인지원실 설치 실적은 연평균 2~3개소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2024년도에는 증인지원실 설치를 위해 총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개소 설치에 약 7,900만원 (설치예산의 44.4%)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²⁸⁾인데, 그 설치 목적은 「민법」 제837조의²⁹⁾ 및 「가사소송법」 제25조³⁰⁾ 등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즉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 지도와 사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판 절차 진행 중 피해자나 증인의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과는 목적·대상·법적 근거 등에서 구별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예산이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³¹⁾은 기능과 목적이 명확히 다른 사업을 예산상 구분 없이 혼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 목적 이외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면접교섭센터의 설치·운영은 현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서비스 향상(1161-403)’ 세부사업 내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라는 내역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28) 2024년에 (구)구리등기소에 설치된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비(3억 2,063만원)와 관급자재 구입비(9,743만원)를 포함해 총 4억 1,80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설치된 증인지원실 설치비(3천만~4천만원)의 10배 이상에 달함.

29)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30)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31) (구)구리등기소에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설치를 위한 예산은 2023년 11억 500만원(공사비 7억 6,6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4억 1,800만원(공사비 3억 2,100만원, 자산취득비 9,7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

동 사업과는 회계 체계상 완전히 구분된 사업임.

그럼에도 기금 사업의 대상인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일반회계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과 회계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혼합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 기준의 일관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또한, 전국 법원 중 일반증인지원³²⁾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법원이 36개소(전체의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에는 증인지원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2026년에도 전혀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증인지원실 설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전국 법원 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연번	법원	특별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증인지원실 미설치사유
1	서울고등,중앙지법	○	○	
2	대전고등,대전지법	○	○	
3	대구고등,대구지법	○	○	
4	부산고등,부산지법	○	○	
5	광주고등,광주지법	○	○	
6	수원고등,수원지법	○	○	
7	의정부지방법원	○	○	
8	인천지방법원	○	○	
9	춘천지방법원	○	○	

32) 특별증인지원 : 성폭력(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일반증인지원 : 위 특별증인지원 대상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피고인과 접촉차단 등)를 신청하는 증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연번	법원	특별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증인지원실 미설치사유
10	청주지방법원	○	○	
11	울산지방법원	○	×	청사구조
12	창원지방법원	○	○	
13	전주지방법원	○	○	
14	제주지방법원	○	○	
15	서울동부지법	○	○	
16	서울남부지법	○	○	
17	서울북부지법	○	○	
18	서울서부지법	○	×	청사구조
19	부천지원	○	○	
20	고양지원	○	○	
21	남양주지원	○	×	예산부족
22	성남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23	여주지원	○	○	
24	평택지원	○	○	
25	안산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26	안양지원	○	○	
27	강릉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28	원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29	속초지원	○	○	
30	영월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1	홍성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2	공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3	논산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4	서산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5	천안지원	○	○	
36	충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7	제천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8	영동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39	대구서부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0	안동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1	경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2	포항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3	김천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4	상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5	의성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6	영덕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7	부산동부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48	부산서부지원	○	○	
49	마산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0	진주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1	통영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2	밀양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3	거창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4	목포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연번	법원	특별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증인지원실 미설치사유
55	장흥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6	순천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7	해남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8	군산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59	정읍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60	남원지원	○	×	청사구조/인력부족
설 치 합 계		59	24	

자료: 대법원 제출

- 더욱이 2024년도 본예산 중 4억 1,000만원은 공사비에서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등으로 전용된 반면, 이후에는 증인지원실의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7,400만원)까지 이루어진 바 있음. 이는 공사비는 남고, 운영비는 부족한 비정상적인 예산 운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① 본 예산 중 4억 1,000만원이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등으로 이·전용되어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고, ②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혼합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목적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법원은 ① 청사 구조나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증인지원실의 신규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감축하고

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②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처럼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 사업과 일반 회계 사업을 구분 없이 병행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 송달료 예산의 반복적 이·전용과 관리 체계 미비

- 내역사업인 ‘송달료’ 사업은 재판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서류 송달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원이 사건 관계인에게 판결문, 소장, 결정서 등을 송달하는 데 사용됨.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3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부족을 사유로 30억 2,600만원이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되어 이를 반영한 예산현액은 343억 8,800만원임. 이 중 341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송달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418	2,616	42,097	41,775	3	319
송달료	31,362	—	3,026	34,388	34,126	—	262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송달료 사업은 2024년도에 반복적인 이·전용과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집행 내역조차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법원에 따르면, 송달료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함께 혼합 집행되고 있어 송달료만 따로 집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송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24년도에는 송달 대상 사건 수가 예측보다 약 11만 건 이상 증가하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총 4개 세부사업³³⁾으로부터 30억 2,600만원의 예산을 자체이용 형태로 전입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는 공공요금 예산 중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는 역전용이 발생하는 등³⁴⁾, 당초 부족을 이유로 전입한 예산이 다시 타 목적으로 활용되는 집행 구조가 확인되었음.

〈이·전용액(30억 2,600만원)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자체이용 (2024.11.8.)	법원시설 관리등	공사비 420-03	△294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94

33)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본부 기본경비(7011-250), 본부운영지원(7031-303),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34) 증인지원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400만원이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 조정됨.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자체이용 (2024.11.8.)	법원시설 관리등	자산취득비 430-01	△1,282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282
자체이용 (2024.11.8.)	본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30-01	△2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자체이용 (2024.11.8.)	본부 운영지원	공사비 420-03	△302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02
자체이용 (2024.11.8.)	본부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430-01	△1,220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220
세목조정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4	재판절차 비용지원	일반수용비 210-01	74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이·전용 및 세목조정은 송달료와 공공요금의 수요 추계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기인함.

실제로 대법원은 2024년 사건 수 추계를 112,545건이나 과소 예측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족분을 타 사업으로부터 충당했으나 정작 이·전용된 예산 중 2억 6,200만원은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음.

- 위와 같은 구조는 예산 부족-전용-불용-재전용이라는 순환이 고착화된 것으로서, 예산의 필요성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채 예산 항목 간 전용과 조정을 통해 임시로 대응하는 방식이 관행화³⁵⁾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송달료 항목은 사건 수와 직접 연동되는 지출이지만,

35) 동 세부사업의 2022년도 이·전용 등 횟수는 28회, 2023년도 이·전용 등 횟수는 14회, 2024년도 이·전용 등 횟수는 25회임.

정작 이에 대한 통계적 추계 기준과 항목별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관리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대법원은 송달료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① 송달료와 공공요금 항목의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정을 마련하고, ② 송달료 예산의 수요 예측은 사건 수, 송달 건수, 건당 평균 송달비용 등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사법정책연구개선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사업은 사법제도의 객관적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양형기준개선,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등을 포함한 사법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29억 8,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5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501	△66	2,984	2,567	358	59

(나) 미편성된 일반용역비 사업으로 세목 전용한 문제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와 사법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양형제도 개선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특정 범죄군을 주제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공개하고 있음.

〈2024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501	△66	2,984	2,567	358	59
양형제도 개선지원	1,004	—	△62	936	886	—	50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2024년도에는 강도상해·무고 범죄군을 주제로 신규 콘텐츠가 제작되었는데, ‘2024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동영상)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외주업체((주)투와이드컴퍼니)와 1억 472만원 규모의 영상 제작계약이 체결되었음.

그러나 본예산에는 일반용역비(210-14)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집행 과정에서 일반수용비(210-01) 예산 1억 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해당 용역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세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501	△66	2,984	2,567	358	59
일반수용비 (210-01)	1,084	—	△136	947	941	—	6
일반용역비 (210-14)	—	—	105	105	105	—	—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2024년도 양형제도 개선 관련 예산집행 내역>

구분	집행내용	집행액(원)	계약상대방	계약방식
의견 수렴	제19차 공청회	54,428,210	(주)리바이벌랩스,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성문화사 등	수의계약
	제12차 심포지엄	15,394,150	덕수문화사, 아텍디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수의계약
	제13차 심포지엄	11,998,140	덕수문화사, 경성문화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수의계약
양형기준 책자 등	2024 양형기준	49,900,000	(주)흥디자인	수의계약
	2023 연간보고서	19,444,700	경성문화사	수의계약
	2023 적응현황분석	18,581,200	한양당	수의계약
체험형 사법 프로그램	키오스크 메뉴 업데이트	15,000,000	(주)아이디랩스	수의계약
	양형체험 프로그램 제작	104,720,000	(주)투와이드컴퍼니	입찰계약
	양형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업데이트	11,000,000	(주)아이오유솔루션	수의계약
	조달수수료	1,105,870	조달청	—
	온라인홍보	20,00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의계약
	기념품제작	21,976,470	강산기프트, 다조아커머스	수의계약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획 당시에는 단순 편집 및 내부 활용 수준의 영상으로 예상되어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외주업체를 통한 영상 제작 계약이 진행되어 회계지침상 일반수용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해 일반용역비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매년 외부 업체를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반복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제작 방식과

외주계약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음.

2024년 역시 신규 콘텐츠 제작이 계획되어 있었고, 계약 규모도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2025년 예산안에서도 동일하게 일반수용비만 편성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 집행 방식과 회계 항목 간 불일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줌³⁶⁾.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외주제작 기반으로 추진되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부합하는 일반용역비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안에 사전 편성하고, 반복적인 세목조정 없이 계획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항목 구조와 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법원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과 원가산정 외부 위탁 문제

- 내역사업인 ‘법원정책연구비’는 주요 사법제도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본예산 8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00만원을 반영한 예산

36) 2024년도 내부검토 결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세목조정함.

현액은 13억 8,500만원임. 이 중 3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다시
이월되었고, 1,000만원은 과제 미계약 등으로 불용되었음.

〈2024년도 법원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501	△66	2,984	2,567	358	59
법원정책연구비	885	501	—	1,385	1,018	358	10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과제 기획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
되는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의 과제가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수행기간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총 19개 과제가 수행되었는데, 이 중 2024년에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8개(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³⁷⁾.

37)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도 7월 말 기준 2024년에 미완료된 과제 11개 중 3개는 아직 진행 중이고, 2025년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예산으로는 총 13개 과제가 진행 중인데, 9개 과제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4개 과제는 입찰공고 중임.

〈2024년도 연구과제 목록〉

(단위: 천원)

연 번	과제명	과제 선정	연구자 선 정	계약 체결	계약 만료	결과 보고	응역 수행 기관	원가 조회료	응역 비용		
									계약액	지급액	이월액
1	민사 재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4.1.15.	24.4.15.	24.5.23.	24.12.22		서울대 산학협력단	1,400	48,000	24,000	24,000
2	K-COURT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24.2.26.	24.4.15.	24.4.29.	24.10.29.	24.12.16.	주아이에스티아이 미래전략연구소	1,000	55,800	55,800	0
3	K-COURT국제교류협력 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4.2.26.	24.4.15.	24.5.16.	24.12.13.	24.12.16.	재단법인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1,400	100,100	100,100	0
4	제4차 등기특별회계 (2018~2027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24.2.26.	24.6.24.	24.7.4.	24.12.4.	24.12.16.	한국행정 연구원	900	32,727	32,727	0
5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	24.3.18.	24.6.24.	24.7.4.	25.1.4.		사단법인 서울행정학회	1,000	53,000	26,500	26,500
6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 설치 방안	24.4.15.	24.7.15.	24.7.31.	25.1.31.		충북대 산학협력단	900	45,000	31,500	13,500
7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24.4.15.	24.8.26.	24.10.16.	25.4.16.		고려대 산학협력단	-	40,000	0	40,000
8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4.4.15.	24.6.24.	24.6.28.	25.1.10.		서울대 산학협력단	-	60,000	30,000	30,000
9	사법부 예산회계 과목구조 개편 및 업무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연구	24.5.1.	24.5.1.	24.5.1.	24.11.1.	24.12.16.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	20,000	20,000	0
10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 및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	24.5.20.	24.5.20.	24.6.20.	24.9.30.	24.9.30.	서울대 산학협력단	-	22,000	22,000	0
11	요약준비서면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4.5.20.	24.8.26.	24.9.12.	25.2.12.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900	48,000	0	48,000
12	등기업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4.5.20.	24.9.30.	24.10.22.	25.3.21.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	660	48,840	24,420	24,420
13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예산안 편성 추진 방안 연구	24.5.	24.5.	24.5.28.	24.8.28.	24.8.26.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22,000	22,000	0
14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동일성·무결성 증명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 관한 연구	24.6.24.	24.6.24.	24.7.5.	24.12.5.	24.11.18.	고려대 산학협력단	-	22,000	22,000	0

연 번	과제명	과제 선정	연구자 선 정	계약 체결	계약 만료	결과 보고	용역 수행 기관	원가 조회료	용역 비용		
									계약액	지급액	이월액
15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4.7.15.	24.9.30.	24.10.29	25.4.29.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900	44,600	0	44,600
16	대법원열람실 공간 재구성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 검토 연구	24.7.15.	24.9.30.	24.10.28.	25.2.28.		상명대 산학협력단	900	49,000	24,950	24,05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	24.7.15.	24.10.28.	24.11.21.	25.5.21.		서울대 산학협력단	900	50,000	25,000	25,000
18	개인회생절차의 지역편차 현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4.7.15.	24.11.18.	24.11.29.	25.8.29.		사단법인 도산법 연구회	1,100	70,000	35,000	35,000
19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와 리더십 연구	24.11.18.	24.11.18.	24.12.6.	25.4.6.		서울대 산학협력단	-	22,000	0	22,000
합 계								11,960	853,067	495,997	357,070

자료: 대법원 제출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마다 3억 5,000만원~5억원 규모의 이월이 매년 발생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용역 수행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과제 기획·선정·계약 체결 등의 전반적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화하지 못하고 연말에 몰아서 추진하는 구조에서 기인함.

〈최근 4년간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정책연구비 (260-02)	1,026	350	△182	1,195	507(42.4)	324	364
2022		1,026	324	-	1,320	853(64.6)	464	3
2023		1,026	464	-	1,490	952(63.9)	501	37
2024		885	501	-	1,386	1,018(73.4)	358	10

자료: 각 연도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게다가 2024년에는 연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과제 중 일부가 미계약되거나 용역 착수에 이르지 못해 이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1,000만원)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전 계획 수립의 부실과 일정관리의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정책연구비³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는 예산현액 4,500만원 중 4,1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도는 각각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대법원과 비교할 때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정책연구과제의 원가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가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우선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단가 기준으로 자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 단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외부 원가산정기관에 원가조회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원 및 국회 지적 등에 따라 반복 과제나 유사 과제가 존재하는 경우 무분별한 외부 위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은 ‘학술연구 용역 원가계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규 제26조제2항³⁹⁾에 따르면

38)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1032-302)’ 사업 중 ‘정책연구용역 등’ 내역사업

3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 단가를 활용해 자체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370만원 등 직급별 단가도 명시되어 있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5년)>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자료: 대법원 제출

재정당국이 동 예규를 마련한 취지는 정책연구의 경우 연구목적과 내용, 범위 및 진행방식이 일반적인 용역이나 제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연구과제 총 71건 중 총 59건(83.1%)을 외부 기관에 원가산정을 위탁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반복·유사 과제여서 기재부 단가 기준에 따라 자체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탁이 선택된 사례로 보임.

※ 2025년도 기준단가는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하여 산출됨.

<2021 ~ 2024년도 정책연구과제별 원가계산 외부 위탁 현황>

연도	연번	과제명	위탁기관	위탁금액 (원)
2021	1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용역	한국재정경제연구원	1,430,000
	2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	정보사회개발연구원	900,000
	3	개인도산제도의 적절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4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1,400,000
	5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 등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6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800,000
	7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증명서 형식의 관리방안 도입을 중심으로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8	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9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국내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0	법정 통·번역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용역	동양경제정보연구소	800,000
	11	「인명용 한자 추가를 위한 음가 검수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2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700,000
2022	1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2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3	행정영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4	「환지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5	조정전담번호사의 업무 정립 및 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개발연구원	900,000
	6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연도	연번	과제명	위탁기관	위탁금액 (원)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		
	7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자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8	법원 신체감정등 개선 방안 연구용역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9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10	국선보조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경제전략연구원	700,000
	11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점검 및 개선방안	미래경제전략연구원	1,200,000
	12	국가등기등록제도사에 대한 학예적 정보의 관리에 관한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800,000
	13	등기등록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4	법원행정처 보관 문서자료 아카이빙(선별, 보존관리 및 정보화 서비스)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5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번호를 위한 국선 번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영분석연구원	660,000
	16	부동산 신탁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660,000
	17	한국형 가사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660,000
	18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770,000
2023	1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양형 정책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2	통일 이후 민법전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1,400,000
	3	법관 임용절차에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개발연구원	1,180,000
	4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정보사회개발연구원	900,000
	5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1,400,000
	6	양형인자로서 합의의 적절한 참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연도	연번	과제명	위탁기관	위탁금액 (원)
	7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미래경제전략연구원	700,000
	8	사법정책연구원 조직진단	미래경제전략연구원	900,000
	9	강제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미래경제전략연구원	1,100,000
	10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 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미래경제전략연구원	1,100,000
	11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동양경제정보연구소	800,000
	12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3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14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 도입방안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1,400,000
	15	사법부지식정보 공유 복합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770,000
	16	온라인 이용자 데이터 수집 · 활용의 적 법성 판단기준 연구	한국경영분석연구원	660,000
	17	각국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 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영분석연구원	770,000
2024	1	민사 재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1,400,000
	2	요약준비서면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경제연구원	900,000
	3	K-COURT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정보사회개발연구원	1,000,000
	4	개인회생절차의 지역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개발연구원	1,100,000
	5	제4차 등기특별회계(2018~2027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정책 연구 용역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6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 담의료기관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업연구원	900,000
	8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	미래경제전략연구원	1,000,000
	9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경제전략연구원	900,000
	10	대법원열람실 공간 재구성 및 대국민 이용 서비스 개선 검토 연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900,000

연도	연번	과제명	위탁기관	위탁금액 (원)
	11	K-COURT연구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경영분석연구원	1,400,000
	12	등기업무에서의 인공지능(AI)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등기정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영분석연구원	660,000

주1) 원가 계산 외부 위탁 후 실제 연구 수행에 이르지 않은 과제도 포함되었음.
자료: 대법원 제출

특히 ‘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1년,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위탁)를 비롯하여, 이후 유사 주제로 진행된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연구’(2022년,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위탁), ‘등기 등록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2022년,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위탁) 등은 주제가 연속적·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산정이 아닌 외부 위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동양경제정보연구소(11건), 한국기업연구원(10건), 한국경영분석연구원(9건), 한국재정경제연구원(8건), 정보사회개발연구원(7건) 등 소수 기관이 전체 외부 위탁 건수의 약 75%를 수탁하는 등 외부 위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과제별 원가산정의 방식에 있어 외부 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외부 위탁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의뢰가 집중되는 현상은 공정성·투명성의 관점

에서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국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 이월 구조와 외부 원가산정 위탁의 반복이라는 이중적인 구조적 비효율을 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집행 시기의 문제를 넘어, 과제 기획부터 비용 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총괄적 관리 체계가 미진함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정책연구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① 과제 기획·계약 시점을 조기화하여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② 반복 과제, 정형적 단가 구조를 갖는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없이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며, ③ 외부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지침 또는 내규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국선변호료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선변호료지원(1143-409) 사업은 형사사건 등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각급 법원에 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698억 8,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98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선변호료지원	69,884	—	—	69,884	69,872	—	12

(나) 국선변호료 지급지연과 집행 관리체계 부재 문제

- 국선변호료지원(1143-409) 사업은 2024년도에 본예산 698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나, 각급 법원에서의 지급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국선변호료 분기별 지급 지연액 현황>

(단위: 원)

분기	지급 지연액
1분기	443,715,840
2분기	3,149,643,240
3분기	8,918,980,552
4분기	8,078,336,632
합계	20,590,676,264

자료: 대법원 제출

-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⁴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
원은 국선번호인 보수 등 의뢰 목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연 사유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대법원은 2021.12.1. 시행된 개정 예규에 따라 이를 전국 법원에 통보
하면서(2021.11.26.자 공문) “월 2회 이상 정기 지급하라”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설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급 지연 사례가
누적되어 206억원 규모의 지급 지연이 공식 보고되었고, 지연 사유는
대부분 ‘예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거나, 배정 시점과 집행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임.

특히 대법원이 2021.11.26.자 공문을 통해 국선번호료를 월 2회 이상
정기 지급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원행정처에 지연 사유를 보고

40)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 제17조(보수 등의 지급) ①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국
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지체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송부)받은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지급일을 입력하며, 출
력한 “국선번호료 지급 입금의뢰 명세서”에 기재된 국선번호인의 은행거래계좌에 제16조에 따라 결
정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
건번호, 국선번호인의 성명,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음에도, 2021~2023년까지 “지연 사례 없음”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다가 2024년에 들어 집중적으로 206억원 규모의 지연 사례 보고가 이루어진 점은, 이전 연도에도 지연사례가 실제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시사함.

- 한편, 대법원은 “보수 등 의뢰목록 제출 이후의 실제 입금 여부는 각급 법원의 소관으로, 중앙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최종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결과는 예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집행 기한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중앙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특히 예규에 따르면 지연 발생 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 내역을 중앙에서 확인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국선변호료 지급과 관련하여 ① 수요 집중 시기를 반영해 예산 배정 시기나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기별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② 지급요청일·입금일 등의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집계해 대법원이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입금 지연 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경고나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연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전문재판운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은 사법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전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33억 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2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문재판운영	3,309	22	-	3,331	3,247	13	71

(나) 공사비의 자산취득비 전용 문제

-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의 2024년도 비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⁴¹⁾ 설치를 위해 공사비(420-03) 비목으로 총 5,800만원이 편성⁴²⁾되었음.

41) 장소 미정

42) 58백만원 내역 : 건축공사 : 14백만원 × 2개소 = 28백만원, 통신공사 : 5백만원 × 2개소 = 10백만원, 전기공사 : 10백만원 × 2개소 = 20백만원

〈2024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세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문재판운영	3,309	22	－	3,331	3,247	13	71
공사비 (420-03)	58	－	△18	40	40	－	－
자산취득비 (430-01)	164	－	18	182	182	－	－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그런데 대법원은 당초 편성된 공사비 5,800만원 중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및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총 3곳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센터 증설을 위해 4,000만원을 집행함.

〈2024년 스마트워크센터 공사비 집행내역〉

센터	좌석수	설치시기	예산	집행액(원)
서울가정법원	4	2024. 4.	공사비	2,050,000
서울행정법원	6	2024. 4.	공사비	9,06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10	2024. 4.	공사비(건축)	9,890,000
			공사비(전기)	3,500,000
			공사비(네트워크)	5,650,000
포항지원	4	2024. 4.	공사비(건축)	5,962,000
			공사비(전기)	1,188,000
			공사비(통신)	2,233,000
합계				39,533,000

자료: 대법원 제출

집행잔액 1,8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전용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행정법원 스마트워크센터의 사무용 책꽂이·책상 등 비품 구입에 사용 됨.

〈전용한 1,800만원의 지출 내역 및 대상 자산(물품)〉

1) 서울서부지법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이미지
책상 (업체명:티앤티) (일반조달제품) (전선캡 부착) (미니서랍 부착)	1400 X 800 X 720	10	323,000	3,230,000	
다용도 옷장 (업체명:티앤티) (일반조달제품) (다이얼 키)	300 X 800 X 1165	10	281,000	2,810,000	
작업용 의자 (업체명:베스틀) (우수조달제품)	W677XD602XH1132	10	328,000	3,280,000	
파티션 (업체명:제니스스) (우수조달제품)	800 X 66 X 1570	32	208,000	6,656,000	
	900 X 66 X 1570	6	221,000	1,326,000	
연결기둥(2방향) (업체명:제니스스) (일반조달제품)	66 X 66 X 1552	2	35,400	70,800	
연결기둥(3,4방향) (업체명:제니스스) (일반조달제품)	66 X 66 X 1552	6	36,000	216,000	
마감바 (업체명:제니스스) (일반조달제품)	66 X 7X 1555	13	17,300	224,900	
총 합 계: 17,813,700					

2) 서울행정법원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3단 책꽂이 (업체명:태솔)	850 X 250 X 300	6	110,000	660,000	
총 합 계: 660,000					

자료: 대법원 제출

○ 특히 위 전용은 2024년 4월 12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계상하지 않은 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⁴³⁾한 뒤, 실제로는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자산취득비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사비의 자산취득비로의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전용감		전용증		전용일자
비목	전용액	비목	전용액	
공사비 420-03	△18,467	자산취득비 430-01	18,467	2024-04-12

자료: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공사비 등 목적성 경비 편성 시 수요조사 및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목 간 전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며, 특히 목

43)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됨.

적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는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01억 400만원 중 485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000만원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48,980	1,596	△472	50,104	48,596	937	570

(나) 일반수용비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비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210-01) 예산액은 3억 1,900만원이었으나, 전산소모품 구매 비용 등의 부족을 이유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예산현액 5억 6,900만원 중 5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48,980	1,596	△472	50,104	48,596	937	570
일반수용비 (210-01)	319	—	250	569	555	3	10

자료: 대법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수용비 부족 및 세목 조정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최근 5년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2020	308	408	716	715	—	1
2021	319	150	469	464	—	5
2022	319	90	409	406	—	3
2023	319	90	409	408	—	1
2024	319	250	569	555	3	10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 연례적으로 부족한 경우 예산 증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집행 비목이 부적정하거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대법원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3억 1,000만원에서 조달수수료 명목으로 1억 6,04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 예산액 중 51.7%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각종 수수료를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수는 있지만, 이는 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2024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p.150),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에서 집행한 다른 사업의 조달수수료 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조달수수료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의 비목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2024년도 대법원 타 세부사업 조달수수료 집행 예시〉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 및 조달수수료 비목	조달수수료 집행액
1	2022-2023년 대법원청사 승강기 관리용역(장기2차)	관리용역비 (210-15)	984
2	2023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	일반연구비 (260-01)	1,560
3	2024년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업 (MS GA SUB 3년차)	자산취득비 (430-01)	3,809
4	2024년 법원 업무용 노후 차량 교체-미니버스	자산취득비 (430-01)	3,572
5	2023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반연구비 (260-01)	4,521
6	대법원청사 소방용 전동기 제어반 교체공사	공사비 (420-03)	343
7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장기계속2차)	일반연구비 (260-01)	35,477
8	K-COURT연구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연구비 (260-02)	910

자료 : 대법원 제출

유사 사례인 국회 입법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 사업 조달
수수료를 해당 사업의 비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3)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디지털 회의체계 구축운영 : ('24)4,956백만원→('25)4,798백만원 (158백만원 감)							
가. 디지털 본회의장 회의진행시스템 개선							
○ 예산증감내역: ('24)620백만원→('25)125백만원(495백만원 감)							
○ 산출근거							
- 일반연구비(260-01): 125백만원(신규)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 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호환 성	보안성	
154	553,114	1.28	0.88	1.00	1.00	1.06	101,703,027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101,703,027
이윤(개발원가의 10%)							10,170,303
직접경비							0
소계(개발원가+이윤+직접경비)							111,873,330
부가세(*10%)							11,187,333
합 계							123,060,663
※ 조달수수료 : 2백만원							

자료: 재정자료시스템, 2025년 예산안 설명 자료 - 국회 입법정보화(정보화)

예컨대, 각급 법원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조달수수료 (4,119만원) 또는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조달수수료(6,417만원)는 각각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관리용역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조달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 비목	조달수수료 비목	조달수수료 집행액
1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노후 UPS 교체 전기공사	공사비 (420-03)	일반수용비 (210-01)	1,149
2	2024년~2025년 각급 법원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리용역비 (210-15)		41,197
3	2024년~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관리용역비 (210-15)		64,173
4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ISP	일반연구비 (260-01)		2,564
5	2024년 재판서 및 사건부 DB구축 사업 -데이터서비스	일반연구비 (260-01)		3,429
6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및 양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 ISP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일반연구비 (260-01)		3,618
7	사법부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 선정 사업(1분류, 4차년도)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2,150
8	사법부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 선정 사업(2분류, 4차년도)-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2,150
		합 계		160,430

자료 :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리용역비, 일반연구비 등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조달수수료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집행 비목을 점검하고,

다년간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필수 집행 사항에 대한 일반수용비
증액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일반수용비 부족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는 기존의 호주 중심의 가(家)단위 편제 방식의 등록부에서 개인별 등록부 작성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85억 1,9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79억 3,400만원이며, 이 중 176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8,519	—	△586	17,934	17,613	—	320

(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와 임차료(210-07) 비목의 예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 2024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4억 9,500만원 중 3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2%에 그치고, 최근 5년간 해당 비목의 결산 내역을 보더라도 매년 집행

률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8,519	—	△586	17,934	17,613	—	32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5	—	△100	395	360	—	35

자료: 대법원

〈최근 5년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	594	—	594	488	106	82
2021	594	—	594	403	191	67
2022	594	—	594	344	250	57
2023	550	△170	380	358	22	65
2024	495	△100	395	360	35	72

자료: 대법원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① 가족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사용료⁴⁴⁾, ② 가족콜센터 및 자료정비사업소 공공요금 등 운영비,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통신비로 집행되었는데, 특히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와 LGU+에 지급하는 정보통신망 사용료의 집행률(72%)이 저조하였음.

44) 대법원은 가족등록업무전산화 내외부망 회선비는 사법부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회선망 할인을 적용 등으로 예산 추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공공요금 및 제세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집행 내역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가족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KT, LGU+) <u>사용료</u>	458,400	327,600	130,800	72
가족콜센터 및 자료정비사업소 공공요금 등 운영비	37,200	32,010	5,190	8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통신비	—	343	—	—
합 계	495,600	359,953	135,990	73

자료 : 대법원 제출

다음으로, 2024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비목의 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27억 9,700만원 중 22억 1,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9%에 그치고, 최근 5년간 해당 비목의 집행률이 매년 높지 않아 집행률 부진이 연례적인 측면이 있음.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8,519	—	△586	17,934	17,613	—	320
임차료(210-07)	2,797	—	△469	2,328	2,210	—	118

자료: 대법원

<최근 5년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	4,806	—	4,806	4,259	547	88
2021	4,499	—	4,499	3,915	584	87
2022	4,506	—	4,506	3,804	702	84
2023	4,065	△162	3,903	3,371	532	82
2024	2,797	△469	2,328	2,210	118	79

자료: 대법원

임차료 비목은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기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서⁴⁵⁾, 당초 정해진 총 사업비에 대해서 금리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5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임.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예산액>

(단위: 백만원)

연 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4년도 예산추계액
2019	755	1,510	1,510	1,510	1,510	755	755
2021	540	1,080	1,080	1,080	1,080	540	1,080
2022	192	383	383	383	383	192	383
2023	12	23	23	23	23	12	23
2024(신규)	556	1,882	1,882	1,882	1,882	1,357	556
합 계							2,797

※ 음영표시는 2024년도 임차료 예산소요 추계액임.

자료: 대법원

45) 2024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세부 편성 내역

-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기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 2,705백만원
- 후건등기정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 고도화: 36백만원
-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 57백만원

- 정보통신망 사용비는 매년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⁴⁶⁾, 임차료는 첫 계약연도에 확정된 금액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추계 시점에서도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예컨대, 다른 대법원 정보화사업의 노후장비 교체 사업⁴⁷⁾을 보더라도 집행률이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불용 및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재정의 계획성 및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최근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에서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일반 인건비 세부사업(7001-151)으로의 이·전용이 잦은데, 부족한 인건비로 인건비로 이·전용을 미리 고려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실수요 대비 과다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음.

〈최근 2년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에서	~으로	금액	이·전용 사유
2023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210-07)	일반 인건비 (보수, 110-01)	380	인건비 부족
2024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일반 인건비 (보수, 110-01)	100	인건비 부족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임차료, 210-07)	일반 인건비 (보수, 110-01)	469	인건비 부족

46) 최근 3년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의 KT와 LGU+에 대한 회선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KT	LGU+	합계
2022	163,800	163,800	327,600
2023	163,800	163,800	327,600
2024	163,800	163,800	327,600

47)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_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사업

- 따라서, 대법원은 가족업무등록전산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도서관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사업은 도서 구입, 법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도서관 문화행사 등 법원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8억 2,500만원, 이·전용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26억 7,000만원이며, 이 중 26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도서관 운영지원	2,825	—	△155	2,670	2,668	—	2

(나) 시설 개선 공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업무 내실화 필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에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420-03목) 예산 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당 예산 전액이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어 집행됨.

〈2024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25	—	△155	2,670	2,668	—	2
도서구입 등	1,241	—	—	1,241	1,241	—	—
재판부 장기대출 도서 구입	117	—	—	117	117	—	—
전자자료 구입	219	—	—	219	219	—	—
서가 구입	54	—	—	54	54	—	—
전국법원도서관 RFID 도입	429	—	△3	426	426	—	—
여비	10	—	—	10	10	—	—
직무수행경비	21	—	5	26	24	—	2
국내외 추록 구입	75	—	—	75	75	—	—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구입	321	—	—	321	321	—	—
해외거점도서관 사업	16	—	—	16	16	—	—
도서보존사업	48	—	—	48	48	—	—
도서관 문화행사	24	—	—	24	24	—	—
구술총서 등 발간	38	—	—	38	38	—	—
영문저널 중문판례집 등 발간	55	—	—	55	55	—	—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157	—	△157	—	—	—	—
□ 세목별 분류(합계)	2,825	—	△155	2,671	2,669	—	2
일반수용비(210-01목)	577	—	—	577	577	—	—
국내여비(220-01목)	10	—	—	10	10	—	—
특정업무경비(250-03목)	21	—	5	26	24	—	2
공사비(420-03목)	157	—	△157	—	—	—	—
자산취득비(430-01목)	2,060	—	△3	2,058	2,058	—	—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2024년도 내역변경 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새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새목 코드	
내역변경 (2024-06-04)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420-03 (공사비)	157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420-03 (공사비)	국유재산 의 증감을 수반하는 공사를 위하여 청사관리 권한이 있는 사법연수 원으로 내역변경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법원도서관은 사법연수원 종합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사에 대한 관리권한을 사법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인 청사의 가치 증감을 수반하는 공사는 청사 관리권한을 보유한 사법연수원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고, 회계처리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함.

〈2024년도 법원도서관 시설 개선 예산 산출근거〉

-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예산: 1억 5,700만원(공사비, 430-03목)
- 법원도서관 법마루 1~3층 안내데스크 개선 및 시설 보완: 1억 990만원
 - 1층 3,530만원
 - 2층 및 3층 3,040만원
 - 안전난간대 개선 및 방수공사 4,430만원
 - 법원도서관 대법원 열람실 안내데스크 등 환경 개선: 3,210만원
 - 안내데스크 및 사무실 환경개선(데스크, 파티션, 안전 가림막 등)

○ 이와 같은 내역변경은 회계처리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법원도서관은 2023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원도서관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한 이유 등으로 예산을 원래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였던 사례가 있어, 특히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2023년의 경우 법원도서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 법원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억 5,7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편성했는데,

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와 같은 과업은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사비(420-03목)로의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23년에는 법마루 정문 외벽 유지보수비로만 3백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 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가 아니라 공사비(420-03목)로 재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참고로, 2023년 동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된 1억 5,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1억 1,0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으로 이용(자체이용) 되었고, 4,400만원은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 인건비(7001-151) 사업으로 전용(승인전용)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자체이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110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2 (공공요금 및제세)	공공요금 부족
전용 (승인전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44	일반인건비 (7001-151)	110-01 (보수)	본부 인건비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이처럼 2023년과 2024년 법원도서관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처리 규정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법원도서관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도서관 시설 개선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수립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숙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교육원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육원 운영지원(7031-309) 사업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39억 5,700만원, 이·전용에 따른 예산현액은 42억 6,100만원이며, 이 중 42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원 운영지원	3,957	—	305	4,261	4,238	—	22

(나) 상용임금 과소 편성에 따른 연례적 예산 초과집행 문제

- 동 사업의 2024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법원공무원 교육원의 청소근로자 및 시설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상용임금(110-03목) 예산 6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8,500만원을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내역변경⁴⁸⁾받아 총 7억 5,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48)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이용, 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 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이 가능함(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년도 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원 운영지원	3,957	—	305	4,261	4,238	—	22
□ 기능별 분류(합계)	3,957	—	305	4,261	4,238	—	22
청사관리 등	2,364	—	181	2,544	2,536	—	7
이러닝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운영	65	—	—	65	60	—	5
교육과정 운영	326	—	△26	300	300	—	—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124	—	—	124	122	—	2
청사시설 유지관리	219	—	150	369	361	—	8
노후설비 교체공사	859	—	—	859	859	—	—
□ 세목별 분류(합계)	3,957	—	305	4,261	4,238	—	22
상용임금(110-03)	667	—	85	752	752	—	—
일용임금(110-04)	2	—	—	2	1	—	1
일반수용비(210-01)	724	—	△58	666	666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31	—	141	571	571	—	—
피복비(210-03)	3	—	—	3	3	—	—
유류비(210-08)	1	—	△1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0	—	—	150	150	—	—
복리후생비(210-12)	12	—	—	12	12	—	—
일반용역비(210-14)	164	—	—	164	157	—	7
관리용역비(210-15)	445	—	△14	431	425	—	6
고용부담금(320-09)	130	—	3	133	132	—	—
공사비(420-03)	1,078	—	150	1,228	1,220	—	8
자산취득비(430-01)	150	—	—	150	150	—	—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2024년 상용임금(110-03목) 예산의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2차례(2024년 12월 3일, 12월 27일)에 걸쳐 총 8,500만원이 동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었음.

〈2024년도 상용임금(110-03목) 예산 내역변경 내역〉

구분 (일자)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 12.3.)	본부 운영지원 (7031-303)	110-03 (상용임금)	60	교육원 운영지원 (7031-309)	110-03 (상용임금)	상용임금 부족
내역변경 (2024. 12.27)	본부 운영지원 (7031-303)	110-03 (상용임금)	25	교육원 운영지원 (7031-309)	110-03 (상용임금)	상용임금 부족

자료: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개년 상용임금(110-03목)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연례적으로 5,300만원에서 8,900만원 사이의 예산을 다른 사업이나 예산과목으로부터 이·전용, 내역변경 등을 받아 초과집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최근 5개년 상용임금(110-03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결산내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591	—	77	668	665	—	3
2021	604	—	—	604	604	—	—
2022	628	—	89	717	717	—	—

연도	결산내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649	—	53	702	702	—	—
2024	667	—	85	752	752	—	—

-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청소구역(생활관, 강의실, 사무실, 청사 외부 등)이 다양하고 넓어 업무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근로자들의 퇴사가 이어짐에 따라 2019년 8월 청소 공무원직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원을 15명으로 하였는데, 예산에는 임금이 13명분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용임금 부족분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제출한 2024년도 상용임금 예산요구(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2024년도 상용임금 예산요구(안)은 청소근로자 15명분 임금 4억 6,300만원과 시설근로자 10명분 임금 3억 3,800만원을 합하여 총 8억 1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6억 6,700만원에 불과함.

- 청소근로자 채용인원의 확대는 청사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현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정확하게 산출하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상용임금 예산요구(안) 산출근거〉

1. 청소 근로자 : 463백만 원 (15명×30,806천 원)

구분	1인당 기본단가(시중노임단가 적용)	
상용 임금	기본급	27,618천원 (11,012원×209시간×12월)
	식비	1,680천원 (140천원×12월)
	상여금	1,100천원 (550천원×2회)
	자격수당	408천원 (34천원×12월)
	소계	30,806천원

2. 시설 근로자 : 338백만 원 = [(소장 1명×36,918천 원)+(반장 1명×35,537천 원)+(조장 2명×34,156천 원)+(기사 6명×32,775천 원)]

구분	1인당 기본단가			
	소장(120%)	반장(115%)	조장(110%)	기사(105%)
상용임금	- 기본급 33,142천원	- 기본급 31,761천원	- 기본급 30,380천원	- 기본급 28,999천원
	- 식비 1,680천원	- 식비 1,680천원	- 식비 1,680천원	- 식비 1,680천원
	- 상여금 1,100천원	- 상여금 1,100천원	- 상여금 1,100천원	- 상여금 1,100천원
	- 자격수당 996천원	- 자격수당 996천원	- 자격수당 996천원	- 자격수당 996천원
합계	36,918천원	35,537천원	34,156천원	32,775천원

- 대법원은 향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상용임금 예산이 실제 지급인원만큼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변경 및 초과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등기특별회계

《세 입》

(1) 기타잡수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잡수입(69-691)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수입 중 특별히 계상할 만한 세입과목이 없는 수입으로, 2024년에는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190억 1,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27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62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잡수입	7	19,014	2,720	16,294	—

(나)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납부금을 반영하여 예산과 수납액의 불일치 해소 필요

- 등기특별회계의 기타잡수입은 통상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불용용품인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으로 최근 5년간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2020년 남양주 등기소부지 손실보상⁴⁹⁾으로 7,636만원의 특수한 수입이 발생한 것 외에 기타잡수입은 매년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49) 구 남양주 등기소 부지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부지(36㎡)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취득하고, 대체 부지(19.4㎡)를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급받게 됨에 따라 보상액(1억 6,560만원)과 매입대금(8,924만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7,636만원)을 국고에 귀속함.

수납된 상황으로 2022년까지는 예산과 결산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기타잡수입 결산 내역(2020~2024) 및 2025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0	7	78	78	100.0	—	—
2021	7	3	3	100.0	—	—
2022	7	10	10	100.0	—	—
2023	7	19,013	3	0.01	19,010	—
2024	7	19,014	2,720	14.3	16,294	—
2025	7	—	—	—	—	—

자료 : 대법원 제출

-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90억 1,300만원, 2024년 190억 1,400만원의 기타잡수입 징수를 결정하고 2023년에는 3백만원, 2024년에는 27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매각한 구 은평등기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라목50)에 해당하는

5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라. 「국민여가활동진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대법원이 은평구로부터 매각대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매각대금의 회계처리상 문제⁵¹⁾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매각대금 잔금 190억 994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이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7차로 분할하여 수납할 예정인 것에 기인함.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징수액 및 징수예정액(2021~2030)〉

(단위 : 백만원, %)

연도	매각원금 징수결정액		매각원금 실제징수(예정)액		매각이자 징수액	적용이자율
	건물	토지	건물	토지		
2021	175	7,825	175	7,825	—	—
2022	—	2,716	—	2,716	208	1.24
2023	—	2,716	—	2,716	658	2.82
2024	—	2,716	—	2,716	680	2.9
2025	—	2,716	—	2,716	—	—
2026	—	2,716	—	2,716	—	—
2027	—	2,716	—	2,716	—	—
2028	—	2,716	—	2,716	—	—
2029	—	2,716	—	2,716	—	—
2030	—	2,716	—	2,716	—	—

자료 : 대법원 제출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51) 대법원에 따르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국유재산 대장을 은평구로 인계처리가 불가능한데, 국유재산 대장을 인계처리하지 않고 계속 매각대금을 받을 경우 매각대금은 회계처리상 선수금에 해당하여 부채로 계상되므로 서울시 은평구에 국유재산 대장을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국유재산 대장을 인계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야 하므로 구 은평등기소 총 매각대금(322억 6,668만원) 중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받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132억 5,673만원)으로 계약변경 후 토지대장을 2023년 12월 29일자로 은평구에 인계하였고 잔여매각대금 190억 994만원을 미수채권으로 등록함.

-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기적 이자수입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목에서도 예산과 결산의 괴리가 발생해,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의 지적⁵²⁾을 통해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예산액은 실제와 맞게 조정된 바 있으므로 2025년 기타잡수입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납액에 맞게 조정되었어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⁵³⁾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내역 및 2025년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148	1	1	0.7	100.0	—	—
2022	155	213	213	137.2	100.0	—	—
2023	155	660	659	425.2	99.8	1	—
2024	155	681	681	439.4	100.0	—	—
2025	<u>659</u>	—	—	—	—	—	—

자료 : 대법원 제출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대법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 계상할

52) 법제사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p.89.~94.

53) 대법원은 2023년 12월 29일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잔액 190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2024년 6월 27일 분납대금 27억 1,600만원이 수납되고 향후 계속해서 동일한 분납대금이 수납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2025년 예산에 기타잡수입을 27억 1,600만원 이상으로 편성했어야함이 타당하나 700만원만 편성한 바 있음.

경우 제대로 된 예산액 반영 시 지출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분할 납부로 인한 기타잡수입 예상 수납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물매각대(71-711)는 용도폐지한 등기소 건물 매각대금으로, 2024년에는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징수 결정액이 없으며, 토지매각대(72-721)는 용도폐지한 등기소 토지 매각대금으로, 2024년에는 10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5억 1,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2024년도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건물매각대	937	—	—	—	—
토지매각대	10,702	518	518	—	—

(나) 유휴등기소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 노력 필요

- 대법원은 2024년 건물매각대 예산안 편성 당시, 매각계획이 있던 여천등기소⁵⁴⁾, 남대전등기소, 대덕등기소 건물대장가액에 기반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⁵⁵⁾인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 여수통합등기소 신축으로 최초 공사완공일이 2023년 12월로 여천등기소는 이 시점을 전후하여 유휴될 예정이었으나, 감리비 증액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 완공이 2025년 7월로 지연됨

55) 대법원은 각 등기소의 건물대장가액은 여천등기소 3억 500만원, 남대전등기소 3억 9,600만원, 대덕등기소 1억 1,300만원으로 합계는 8억 1,400만원으로 예산액 9억 3,700만원에 미치지 못하나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과 세출규모의 일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토지매각대는 이미 매각되어 매각대금을 분납받고 있던 구 은평 등기소 매각대금과 매각계획이 있던 여천·남대전·대덕 등기소의 공시지가에 대지면적을 곱한 금액⁵⁶⁾인 10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2023년 말 기준 유희등기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말 기준 유희등기소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기소 명	건축 연도	면적(㎡)		대장가액		유희결정 시점	활용 현황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구 울산중부등기소	1995	634.40	1,648.1	286	1,620	2014.11.17.	활용계획 협의 중
구 전주등기소	1999	1,287.96	1,264.4	595	2,176	2019.12.2.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⁵⁷⁾
구 남양주등기소	2006	1,459.8	2,352.9	922	12,572	2022.1.1.	법원 기록관 신축 예정 (2025. 6. 착공)
구 구리등기소	1997	636.2	1,350.6	1,058	4,779	2022.1.1.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2024. 3. 개소)
구 남대전등기소	1997	863.93	1,892.9	396	2,925	2022.10.4.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 대덕등기소	1983	483.0	1,625.1	113	2,234	2022.10.4.	2024. 5. 매각완료

자료 : 대법원 제출

○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독신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구 남대전

56) 107억 200만원 =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27억 1,500만원 + 여천등기소 25억 4,600만원 + 남대전등기소 29억 2,500만원 + 대덕등기소 25억 1,600만원

57)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예산편성 당시 전주등기소의 경우 전주시에서 매입을 희망했으나, 전주시의 예산 반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세입예산 산출 근거에서 제외했다고 함.

등기소를 대전시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⁵⁸⁾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양 부동산의 가격 차액 5억 1,819만원⁵⁹⁾의 토지매각대만 수납하였고, 이외의 유휴등기소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건물매각대와 토지매각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음.

- 구 등기소부지의 경우 구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도심의 쇠퇴를 막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유휴결정 이후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⁶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등기소 중 구 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보유한 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독신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울산광역시와 신축하여 교환하기로 2023년 4월경 구두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는 국유재산법상 교환 제한 대상에 해당⁶¹⁾하여 다시 활용계획을 모색 중인 상황이며,

구 전주등기소의 경우 전주시 측에서 계속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사정으로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고, 최근

58) 교환으로 획득한 부동산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8-22 및 88-18 토지 및 건물
교환 계약일자 : 2024. 5. 28., 세입 징수일자 : 2024. 5. 29.

59)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시 국유재산의 금액(5,316,442,520원)과 교환대상 부동산의 금액(4,798,247,400원)의 차액

60) 매각이 완료된 구 포천등기소의 경우 1999년 유휴가 결정되었으나 포천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도로 해당 부지와 건물을 2013년부터 유상대부하여 사용하다가 2023년 매입한 바 있음.

6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전주시는 2026년 12월에 매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주지방법원에 회신한 바 있고,

구 대덕등기소의 경우 2023년말 대덕구청에서 사용허가를 희망하였으나 대덕구청의 예산상의 이유로 유상사용허가 및 매입이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임.

- 한편, 2024년 이후 수원광역등기국 및 여수등기소 신설로 인해서 새롭게 유희되는 등기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해당 등기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024년 이후 추가추가예정 유희등기소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기소 명	건축 연도	면적(㎡)		대장가액		유희결정 시점	향후 계획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구 동수원등기소	2000	2,644.1	2,646	2,840	14,923	2024.4.1.	활용계획 검토 중, 미수립시 매각 또는 교환 예정
구 장안등기소	2002	817.65	1,996.5	724	3,739	2024.4.1.	활용계획 검토 중, 미수립시 매각 또는 교환 예정
구 여수등기소	1975	490.8	1,219	273	1,154	2025. 8.	활용계획 검토 중, 미수립시 매각 또는 교환 예정
구 여천등기소	1988	905.5	1,515	305	4,781	2025. 8.	활용계획 검토 중, 미수립시 매각 또는 교환 예정

자료 : 대법원 제출

- 유희등기소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부지 등의 조속한 매각을 통한

국가재정 확충 또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유휴 시점을 전후하여 등기소 부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통합등기소 신축 확정 이후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휴가 예정된 등기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의사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조속히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유휴 등기소 부지 활용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처분을 통해 건물매각대와 토지매각대가 예산 편성시 계획된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등록 기본경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록 기본경비(7011-271) 사업은 각급 등기소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2억 7,300만원, 이·전용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2억 3,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등록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록 기본경비	4,273	—	△40	4,232	4,131	—	102

(나) 불필요한 예산 전용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등록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비목 중 국내여비는 당초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용을 통한 증액분 1,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억 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등록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비목은 지난 4년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적이 없는데, 대법원은 2024년 국내여비 비목을 1,800만원 전용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증액한 금액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액인 8,8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만원만을 집행하였음.

〈등록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비목 결산 현황(2020년~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98	—	—	98	75	—	23
2021	92	—	—	92	62	—	30
2022	93	—	—	93	77	—	16
2023	88	—	△6	81	75	—	6
2024	88	—	18	106	80	—	26

자료 :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국내여비 집행액은 6,900만원⁶²⁾이었고, 4분기에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완료를 위한 미래등기추진단 및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의 국내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⁶³⁾됨에 따라 해당 출장의 국내여비 집행 예상액과 전년도 8월에서 12월까지의 집행액을 기반으로 2024년도 국내여비 예산액이 향후 1,800만원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1,800만원을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62) 대법원은 6,900만원을 집행액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추후 반납액이 발생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실제 집행액이 아닌 일선 관서에 교부한 금액으로 보임.

63) 미래등기추진단과 사법등기심의관실은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완료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80건의 출장과 15,236,240원의 국내여비를 집행하였음.

- 예산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⁶⁴⁾의 예외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⁶⁵⁾은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것에 유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이 국내여비를 자체전용한 일자는 12월 10일이고 이후 일선 관서에서 국내여비 2,008만원이 반납⁶⁶⁾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5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전용에 우선하여 각 부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예산집행액과 향후 소요액에 대한 철저한 추계를 했다면, 국내여비가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각 관서에 교부한 국내여비를 반납받아 미래등기시스템 완료를 위해 출장을 수행하는 부서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 예산 집행 점검 소홀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법원은 향후 보다 면밀하게 예산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정확한

6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235.

66) 최종반납일 2025년 1월 14일

추계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 등기업무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 증명 등의 발행 경비, 등기신청사건 업무 처리비, 등기국·과·소 건물유지·보수, 등기장비의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45억 6,100만원, 이·전용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70억 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61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운영지원	24,561	47	2,399	27,006	26,162	49	796

(나) 인건비 전용 재원을 통한 일반수용비 우회 집행 재발 방지 필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총 167개의 등기관서 청사의 각종 공공요금과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책임보험료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해 2024년 11월 18일 등특 인건비 세부사업(7001-152)으로부터 인건비 35억을

자체전용한 바 있으며, 인건비 자체전용일 이후 각급법원의 등기국·과·소는 다음과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바 있음.

〈2024. 11. 18. 이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사례〉

(단위: 천원)

일자	보내는 세목	받는 세목	금액	집행관서	세목조정 사유
2024.12.10.	210-02	210-01	20,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부족
2024.12.12.	210-02	210-01	20,000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및 관내등기소 사무용품 등 소모성물품비 부족
2024.12.19.	210-02	210-01	22,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부등본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부족
2024.12.20.	210-02	210-01	15,000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및 관내등기소 사무용품 등 소모성물품비 부족
2024.12.24.	210-02	210-01	2,346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및 관내등기소 사무용품 등 소모성물품비 부족
2024.12.26.	210-02	210-01	1,438	광주지방법원	등기부등본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부족
2024.12.27.	210-02	210-01	715	광주지방법원	등기부등본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부족
2024.12.27.	210-02	210-01	1,7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 소모성 물품(봉투류 및 사무용품) 구입비 부족
2024.12.30.	210-02	210-01	8,5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부족,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부족
2024.12.30.	210-02	210-01	12,9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사무용품 구입비 부족

자료 : 대법원 제출

- 이와 같이 인건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한 후 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관리용역비(210-15)·민간위탁사업비(320-02) 등 위탁·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고용부담금(320-09)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같은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만 최소화 되도록⁶⁷⁾ 해야 하므로,

인건비를 전용해 사실상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인건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한 후 다시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과 같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67)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5~46.

(5)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1334-307) 사업은 종이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15억 3,500만원, 이·전용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15억 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5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535	47	-	21,582	20,579	-	1,003

(나) 미래등기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액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미래등기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의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법인 등기 전자신청을 도입하고, 지역에 무관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비 805억 4,300만원이 투입되고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223억 6,400만원인 정보화사업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시스템 구축,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감리 등의 정보화 사업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음.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의 정보화사업 계약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계약건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유형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2020.8.14.~2025.5.19.	62,398	구축(개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2020.8.14.~2025.5.19.	1,301	구축(개발)
미래등기시스템 인프라 구축	2022.12.30.~2024.03.14.	3,862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1차	2022.10.25.~12.9.	485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2차	2022.11.23.~12.23.	789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3차	2023.1.19.~4.30.	65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4차	2023.5.18.~10.15.	29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5차	2023.4.28.~11.30.	215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6차	2023.6.1.~11.30.	429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7차	2023.9.15.~11.30.	4,648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9차	2023.12.27.~2024.1.31.	46	구축(장비)
미래등기시스템 상용SW 구매 10차	2023.11.28.~2023.12.29.	8	구축(장비)

자료 :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2022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사후관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 2024년 예산에 1억 9,100만원⁶⁸⁾을 편성한 바 있음.

68) 산출 근거 : 2022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비(1,273,801,000원) × 유지보수율(15%) = 191백만원

- 대법원이 2022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⁶⁹⁾」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상용 소프트웨어〉

(단위: 원)

구분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
DB암호화	Cubeone, 4 core Base package	19,030,000	1	19,030,000
DBMS	Tibero 6, DBMS, Enterprise(x86) 1Core	11,110,000	2	22,220,000
EDMS	INZI-dDIMS ECM server v7.0	34,375,000	1	34,375,000
UI SW	웹스퀘어5 v5.0	9,328,000	14	130,592,000
SSO	라온시큐어, TouchEn Wiseaccess v1.3, SSO Agent	19,140,000	1	19,140,000
WAS	Oracle WebLogic Server 12c, Enterprise Edition, x86	8,390,000	6	50,340,000
	Oracle US/Oracle WebLogic Server 12c, Standard Edition	6,860,000	5	34,300,000
연계	MESIM Indigo ESB v2.5, Enterprise	49,500,000	1	49,500,000
위변조방지	e-Page SAFER V2.5, Client for Non-ActiveX	34,700,000	1	34,700,000
챗봇	TeAna Chat v2.0	6,800,000	4	27,200,000
전자서명 및 인증(내부용)	AnySign v1.1	20,900,000	1	20,900,000

- 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구분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
전자서명 및 인증(대국민용)	AnySign Lite v1.0	20,900,000	1	20,900,000
PDF 변환(서식)	ezPDF Work Flow AD	22,000,000	1	22,000,000
OTP	GrippinTower v3.1, Server	21,780,000	2	43,560,000
	GrippinTower v3.1, Gateway Server	7,722,000	2	15,444,000
	GrippinTower v3.1, Client License	67,100	5,000	301,950,000
PDF뷰어	ezPDF WebViewer v1.0	33,000,000	7	207,900,000
PDF 변환(이미지)	ezPDF Work Flow v3.0	27,000,000	5	128,250,000
스캔SW	INZI-iForm v5.0	77,000,000	1	77,000,000
DB접근제어	Petra v4.1	14,500,000	1	14,500,000
계			5,057	1,273,801,000

자료 : 대법원 제출

- 따라서, 2022년 12월말 인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2023년말 끝나게 되므로, 2024년 예산에 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반영했음.

대법원에 따르면 미래등기추진단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소프트웨어⁷⁰⁾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을 인도한 날부터 1년간이 아니라 미래등기시스템 전국 개통일인 2025년 1월 31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였는데, 대법원의 착오로 이와 같은 사정을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알게 되면서 2024년에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된 상용 소프트웨어

70) WAS에 해당하는 Oracle Weblogic server 12c, Enterprise Edition x86, Oracle US/Oracle WebLogic Server 12c, Standard Edition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도입일인 2022년 12월 말부터 1년간이 무상하자담보기간임.

유지보수 예산 1억 9,1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총사업비에서도 반납절차를 거쳐 모두 감액되었다고 함.

-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납품의 정상적 확인을 위한 검사조서 발행 전에 상용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받게 되고, 대법원은 2022년에 도입한 대다수의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 2022년 11월 24일과 12월 9일에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미래등기시스템 전국 오픈일로부터 1년’인 상용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받은 바 있음.

즉, 대법원은 2022년 12월말 시점에서 이미 2022년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무상 하자담보기간이 2026년 1월말 까지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홀로 2023년도 연말까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향후 대법원은 정보화사업의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등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사업의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계약의 상세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전액 불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괄》

(1)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12월 15일 「공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
- 동 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는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고,⁷¹⁾ 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판활동지원(소송구조지원, 조정제도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등), 사법정보화운영(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임.⁷²⁾

71) 「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2)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소송구조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조정제도지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에 민간경상보조
소년보호 등 지원	소년보호재판 및 아동보호절차 지원,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의 전문가 진단 및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지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소송자료 검색, 첨부서류 제출 등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최근 여유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999억 2,000만원으로 2019년 559억 8,800만원 대비 257.1%가 증가하였음.

〈최근 6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규모 (연도말 현재)	여유자금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
2019	9,744	46,087	55,988	36,342
2020	43,343	82,754	95,339	39,351
2021	39,048	26,459	83,177	△12,162
2022	26,459	31,420	84,383	1,206
2023	3,920	36,715	120,387	36,004
2024	4,815	77,187	199,920	79,533

주) '여유자금 운용'이란 한국은행 또는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규모고, '여유자금 회수'란 여유자금 운용으로 전년도에 한국은행 또는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중 회수되는 여유자금 규모를 의미함

자료: 대법원 제출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이처럼 여유자금의 급증은 주요 지출(사업비, 기금 운영비) 대비 자체수입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자체수입은 1,435억 4,400만원으로 주요 지출(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대비 723억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임.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중은행금리 인상으로 자체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출연금 수입이 대폭 증액되어 여유자금의 급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수입	자체수입(A)	92,527	84,549	76,825	102,969	143,544	231,796
	정부내부수입	—	—	30,000	30,000	30,000	30,000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등	43,343	39,048	26,459	3,920	4,815	128,470
	수입총계	135,870	123,597	133,284	136,889	178,359	390,266
지출	사업비(B)	53,072	67,103	71,833	70,147	71,097	104,520
	기금운영비(C)	44	35	31	27	75	51
	정부내부지출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여유자금운용	82,754	26,459	31,420	36,715	77,187	255,695
	지출총계	135,870	123,597	133,284	136,889	178,359	390,266
수지차(A-B-C)		39,411	17,411	4,961	32,795	72,372	127,225

주) '정부내부지출'은 정부의 재정용자나 국채상환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재정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고, '정부내부수입'은 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대법원 제출

- 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고 남은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여 미래의 특정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재정제도로,⁷³⁾

73) 「예결산검토 표준교재-기금」, 국회의정연수원, 2024.8., 5-7.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주요 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⁷⁴⁾ 더구나,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금 사업의 조정 또는 근본적인 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⁷⁵⁾

- 특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에 해당하는데, 사업 수행이 기금운용의 주요 목적인 사업성 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은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확대 또는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⁷⁶⁾ 등 타 기금 또는 회계로의 전출 등 과도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4)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2019.5.)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부적정’한 측면(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보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를 관망할 필요)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기금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며 주요 사업들이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또한 「2022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음.

75)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나라살림 리포트(2019-제12호), 2019. 12.

76)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원이 여유있는 기금 등에서 예탁받아 재원이 부족한 기금 등으로 예수함으로써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국가재정 전반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수 입》

(2)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국고예금이자 등을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4년에는 당초 편성한 계획액은 없었으나, 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8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	8	8	—	—

(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개선 필요

- 대법원은 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학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 등을 수납하고 있음.
-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⁷⁷⁾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⁷⁷⁾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익 등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수익 반납을 지연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은 2024년에 2023년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환금을 정산하여야 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환금을 정산하였고, 2023년에는 2017년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환금을 정산하는 등 이러한 정산 지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대법원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반납 수납 현황〉

(단위: 원)

결의일자	결의내용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3. 5. 25.	2017년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반환금	110,000	110,000
2023. 5. 25.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반환금	453,200	453,200
2023. 5. 25.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611,640	611,640
2023. 5. 25.	2017년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반환금	162,080	162,080
2023. 5. 25.	2017년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250	250
2023. 5. 25.	2017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반환금	59,120	59,120
2023. 5. 25.	2017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200	200
2023. 5. 25.	2018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75,570	75,570
2023. 5. 25.	2018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10	10
2023년 소계		1,472,070	1,472,070

결의일자	결의내용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4. 5. 2.	2022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607,380	1,607,380
2024. 5. 2.	2022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601,940	601,940
2024. 5. 2.	2022년 한국법학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205,750	1,205,750
2024. 5. 2.	2022년 한국법학원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860	860
2024. 5. 2.	2022년 법조윤리협의회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831,370	831,370
2024. 5. 2.	2022년 법조윤리협의회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290	290
2024. 5. 2.	2022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640,320	640,320
2024. 5. 2.	2022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607,380	1,607,380
2024. 5. 2.	2022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601,940	601,940
2024. 5. 2.	2017년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국고보조금 정산금 반환금	960	960
2024. 5. 3.	2022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942,650	942,650
2024년 소계		8,040,840	8,040,840
2025. 3. 5.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406,340	406,340
2025. 3. 5.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고보조금 수익금 반환금	313,170	313,170
2025년 소계		719,510	719,510

자료: 대법원 제출 수입징수부를 바탕으로 제작성

- 구체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보조사업자정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보조사업 이자수익 등을 2024년 2월에 반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정산은 2025년 3월 5일에 이뤄졌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조금 정산 절차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를 재무담당관실로 통지하고 재무담당관실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재무담당관실로의 통지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 발생 사실 통지가 누락되어 징수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보조금 사업 정산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회계연도가 아니라 차기 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2회 계연도 이상 지연하여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을 반납처리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정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반납 지연은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보조사업 이자수익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반납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서에서 정산 내역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 대법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목으로 국고예금이자와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는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를 매년 수납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8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	3	3	—	—
2022	—	3	3	—	—
2023	—	2	2	—	—
2024	—	8	8	—	—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와 같이 매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기타재산이자수입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고예금이자, 국고보조금 수익금과 이자 등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하고는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당시에 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별도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는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과 ‘사법서비스 향상’의 내역사업인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사업 총 2개의 보조사업이 있어 국고보조금 이자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⁷⁸⁾에 따라 국고예금이자도

78)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매년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유동적이더라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징수결정액 발생 자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징수결정액이 유동적이어서 규모의 예측이 어렵더라도 최근 3년간 수납실적의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함으로써 수입과목 자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수입 규모에서 기타 재산이자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총계주의⁷⁹⁾의 원칙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7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 출》

(3) 소송구조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송구조지원 사업(1161-301)은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68억 5,700만원이며 이 중 6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계획액 68억 5,700만원 중 17억 4,900만원은 개인파산·회생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17억 4,900만원 중 13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소송구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소송구조지원	6,857	—	—	6,857	6,320	—	537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1,749	—	—	1,749	1,346	—	403

(나)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전년 대비 32.6%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사건의 증가 추세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⁸⁰⁾에 따라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2024년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13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0%)되고 4억 300만원이 불용되어 2023년 이전 수준(12억 9,400만원 집행, 집행률 98.1%)과 유사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즉,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예상한 바와 달리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80) 2023년 9월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조대상자 소득조건이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되었음.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2022~2024년 소송구조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D)
		당초 (A)	수정 (B)						
2022	계	6,027	6,027	—	6,027	5,874	—	153	97.5
	일반 소송구조	4,588	4,588	—	4,588	4,588	—	—	100.0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1,439	1,439	—	1,439	1,286	—	153	89.4
2023	계	5,930	5,930	—	5,930	5,905	—	25	99.6
	일반 소송구조	4,611	4,611	—	4,611	4,611	—	—	100.0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1,319	1,319	—	1,319	1,294	—	25	98.1
2024	계	6,857	6,857	—	6,857	6,320	—	537	92.2
	일반 소송구조	5,108	5,108	—	5,108	4,974	—	134	97.4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1,749	1,749	—	1,749	1,346	—	403	77.0

자료: 대법원 제출

- 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 사건의 지급건수 및 파산·면책 사건의 송달료 지급 단가를 실제 집행 현황 대비 과다계상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변호사 비용	파산· 면책	건수	1,438	1,529	1,933	1,946	1,667	1,895	1,667	2,182
		단가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1
	회생	건수	29	13	24	8	24	13	508	21
		단가	420	418	420	420	420	369	420	404
송달료	파산· 면책	건수	1,142	3,028	1,610	3,551	1,646	3,679	1,646	4,205
		단가	587	196	587	169	540	163	540	171
	회생	건수	23	43	40	72	43	148	527	249
		단가	503	412	503	364	468	396	468	384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조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회생 사건의 지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구조대상자가 구조대상 기준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의 각호 중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지급 건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송달료 단가의 경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5항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⁸¹⁾ 실제 송달료는 이보다 적은 규모로 지출(2024년

81)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⑤ 제15조제2항에 불구하고 개인파산등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 1에 정해진 예납기준의 범위 이내로 한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x4회)	신청인, 채무자 등

계획 단가 대비 31.7%)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회생 사건의 지급 건수는 과거 구조대상 기준별 지급 현황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획 당시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회생 소송구조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파산·면책 사건의 송달료 단가 역시 채권자 수 등의 변수로 실제 단가는 더 적게 집행됨에도 그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납기준의 최대치로 계상하여 연례적으로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대상자 요건별 통계자료 등을 참고해서 소송구조 수요를 면밀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송달료 단가의 경우 과거 지급단가 추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계상하는 등 향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계획 시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계획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적용대상사건	송달료 및 수송달자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8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4)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1161-303)은 민간 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를 실현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38억 7,900만원으로 38억 7,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계획액 38억 7,900만원 중 35억 4,800만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35억 4,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879	—	—	3,879	3,879	—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3,548	—	—	3,548	3,548	—	—

(나) 보조사업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집행잔액 관리 미흡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법원의 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미등록자, 재산범죄피해자, 개인회생·파산신청자, 소액임차인 등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및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등 소송대리를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⁸²⁾는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회수금’은 소송절차나 집행절차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되돌려 받는 송달료, 신체감정료, 검증료, 집행비용 잔액 등 환급금의 항목으로 일종의 ‘집행잔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⁸³⁾ 대법원은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법원회수금을 별도로 반납받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해연도 말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8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83)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12조(소송비용 상대방상환금 및 법원회수금의 회계처리 등) ① 소송비용 상대방상환금이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한 금원(법원의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상대방 상환금으로 본다)을 말하며, 법원회수금이란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소송절차나 집행절차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되돌려 받는 송달료, 신체감정료, 검증료, 집행비용 잔액의 환급금 등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입출금내역서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월, 11월, 12월 4차례에 걸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회수금이 10억 2,000만원 가량 발생하였으나, 이를 별도 정산처리하지 않고 12월 31일에 재차 무료법률구조사업비로 지출하였음.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	입금	지출 및 입금 내용	항목
01.29	-	1,774,000,00	사업비입금	
01.29	1,774,000,000	-	소송비용등 상환(2월)	무료법률 구조지원비
02.06	-	154,648,968	법원회수금(1월분)	법원회수
03.08	-	124,868,240	법원회수금(2월분)	법원회수
04.05	-	96,710,609	법원회수금(3월분)	법원회수
05.07	-	121,819,577	법원회수금(4월분)	법원회수
06.11	-	66,263,059	법원회수금(5월분)	법원회수
06.23	-	135,940	예금이자	이자
07.09	-	68,951,872	법원회수금(6월분)	법원회수
08.07	-	51,020,868	법원회수금(7월분)	법원회수
09.09	-	52,308,516	법원회수금(8월분)	법원회수
10.08	-	54,763,824	법원회수금(9월분)	법원회수
10.17	-	443,190,700	사업비입금	
10.17	443,190,700	-	소송비용등 상환(10월)	무료법률 구조지원비
11.07	-	80,824,358	법원회수금(10월분)	법원회수
11.18	-	443,547,550	사업비입금	
11.18	443,547,550	-	소송비용등 상환(11월)	무료법률 구조지원비
12.06	-	61,008,037	법원회수금(11월분)	법원회수
12.26	-	86,483,909	법원회수금(12월분)	법원회수
12.29	-	389,360	예금이자	이자
12.30	-	887,261,750	사업비입금	
12.30	887,261,750	-	소송비용등 상환(12월-1)	무료법률 구조지원비
12.31	1,019,671,837	-	소송비용등 상환(12월-2)	무료법률 구조지원비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원회수금을 차감한 지원금만큼 편성하여 법원회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협의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회수금을 동일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보조사업 계획서나 신청서, 교부결정통지서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음에도 기금 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의 협의만으로 이를 반납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원회수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⁸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84) 참고로 동 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보조사업인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원회수금을 정산하여 반납받고 있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보조사업 정산결과>

(단위: 원)

보조기관	반납예정액 (A+B+C)	집행잔액(A)	이자발생액(B)	법원회수금(C)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19,720	80,362,830	12,616,760	105,740,139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

(5) 소년보호 등 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은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64억 5,000만원이며 이 중 54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계획액 64억 5,000만원 중 8억 6,700만원은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6억원이 집행되고 2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4억 3,000만원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편성되어 7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2024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	—	6,450	5,489	423	537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867	—	—	867	600	—	266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430	—	—	430	7	423	—

(나)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포함),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 포함)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및 집단상담, 문화체험 실시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⁸⁵⁾

85)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45.4%, 2024년 69.3%로 매년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D)
	당초 (A)	수정 (B)						
2022	1,184	1,184	—	1,184	547	—	637	46.2
2023	1,184	1,184	—	1,184	538	—	646	45.4
2024	867	867	—	867	601	—	266	69.3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적정한 심리와 처분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의결된 바 있고, 대법원은 2024년 계획액의 전년 대비 감액 및 적극적인 각급 법원 예산 배정을 통해 개선하는 등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동 사업의 집행률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는데, 전문가 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에 총 1,184건으로, 소년보호집행감독 사건 등 총 사건 수 35,034건 대비 3.4%에 불과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이는 2021년 총 사건 수 대비 실시 건수 비율이 6.0%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노력의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소년보호집행감독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 수(A)	29,979	29,644	32,020	36,858	35,034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15,149	13,989	14,100	18,207	19,223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2,486	3,954	4,834	4,760	4,422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692	855	535	371	292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10,563	9,843	11,698	12,671	10,424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1,089	1,003	853	849	673
전문가 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건수(B)	1,036	1,772	1,349	1,663	1,184
총 사건 수 대비 실시 건수(B/A)	3.5	6.0	4.2	4.5	3.4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문가 진단 등의 실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서의 전문가 진단 및 의견조회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관련 법률에서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건들이 대상자의 발달적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유형의 사건으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범죄 원인의 규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사건

의 특수성 등 구체적 재판사항에 따라 실시 건수가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시 건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과 달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대해 과거 실적 및 최근 수요를 고려하여 배정액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한 바 있으나,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및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등에서 전문가 진단 또는 의견조회의 실시 비율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이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및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등에서 전문가 진단 또는 의견조회의 실시 비율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대상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 9,000만원 규모의 2024년 신규 사업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37,893	430	3,161	12,110	13,758	8,434
○토지매입비	8,393	—	2,518	3,357	2,518	—
○공사비	26,065	—	—	7,819	10,426	7,820
○시설부대경비	3,435	430	643	934	814	614
－ 기본설계비	734	425	309	—	—	—
－ 실시설계비	637	—	319	318	—	—
－ 감리비	2,004	—	—	601	802	601
－ 시설부대비	60	5	15	15	12	13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사업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4억 2,500만원 및 시설부대비(420-05목) 500만원 총 4억 3,000만원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나,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1.6%)됨에 그치고 4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동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2024년 7월 2일에 서야 완료되었고, 이후 2024년 7월 30일 설계용역 공고, 2024년 11월 26일 설계용역 계약 체결이 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진행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24. 7. 2.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2024. 7. 3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공고
2024. 9. 5.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전기설계용역 조달청 계약 요청
2024. 11. 2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전기설계용역 계약 체결
2024. 11. 26.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사업의 사전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인원 수요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⁸⁶⁾ 기존 각급 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우려 등 사업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⁸⁷⁾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로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⁸⁸⁾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만 최소 4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

86) “본 사업계획은 교육과정별 주제가 되는 사건의 통계를 통해 교육인원을 산정하고 있는바, 각종 상수 값을 적용해 참여 인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 교육인원 수요를 산정한 근거가 모호함. 또한, 본 시설의 서비스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의 의무 교육이 아닌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함.” 「가정·소년·아동보호 종합센터 신축사업 사전타당성평가」, 2023.1., 한국개발연구원

87) 「가정·소년·아동보호 종합센터 신축사업 사전타당성평가」, 2023.1., 한국개발연구원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이고,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⁸⁹⁾에 따라 공사계약에 표준행정소요일수로 통상 70일~12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향후 건립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향후 건립계획〉

일자	추진내용
2024. 12. ~ 2025. 8.	기본설계용역 실시
2025. 9. ~ 2026. 5.	실시설계용역 실시
2026. 6. ~ 2026. 8.	공사 발주
2026. 9. ~ 2026. 9.	착공 준비
2026. 10. ~ 2028. 12.	건립 공사 추진

자료: 대법원 제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8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입찰)
경쟁 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미만	45일	25일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일	35일
			50억원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종평제 포함)		100일	85일
		고난도공사		120일	95일

자료: 조달청

- 따라서 대법원은 동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서 5년간 379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건립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이후 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및 센터의 활용률 등 성과지표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은 134억 9,400만원이며 이 중 127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계획현액 134억 9,300만원 중 9억 1,300만원은 ‘인신보호 제도 운영 등’ 사업에 편성되어, 7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8,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또한 21억 100만원은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에 편성되어, 20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서비스 향상	13,470	24	—	13,494	12,761	198	534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1,329	—	—	913	723	84	106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24	—	2,101	2,017	25	58

(나) 연도말 계약 체결에 따른 이월 부적정

-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사업은 「인신보호법」⁹⁰⁾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운영비와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2024년 계획액 중 일반수용비(210-01목) 8,400만원이 다 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산소모품 납품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연도말 계약 체결에 따른 납품 지연 및 이월으로, 대법원은 토너 304개에 대해 2024년 12월 11일에 긴급입찰공고를 게시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인신보호 운영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진행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24. 12. 11.	인신보호 운영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입찰공고 게시
2024. 12. 17.	인신보호 운영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계약 개찰
2024. 12. 31.	인신보호 운영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계약 체결

자료: 조달청

90)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동 계약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⁹¹⁾에 따른 긴급입찰공고로 추진하였는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의 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예방 등의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대법원은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긴급하지 않은 계약을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체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이월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한바, 이러한 연도말 집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지양 필요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홍보비, 배심원 여비 및 조사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정책연구비(260-02목)는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운영 제도 등을 연구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위한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하여 4,900만원이고, 이 중 2,500만원이 이월됐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의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책연구비 (260-02)	25	25	24	49	-	25	24

자료 :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한 뒤 다음연도로 정책연구비를 이월하고 있음. 특히 2023년에는 2023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4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나 2024년 연구용역 수행 중 계약이 해지되어 2,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4년 역시 12월 30일에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5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최근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021	30	29	-	29	(1차) 21.11.1.~ 21.11.11. (2차) 21.11.25. ~21.12.6.	21.12. ~22.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형사 정책학회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022	25	24	—	24	(1차) 22.5.2.~ 22.5.17. (2차) 22.5.30~ 22.6.14.	22.8. ~23.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형사 법학회
2023	25	24	—	24	(1차) 23.10.18. ~23.11.7. (2차) 23.11.23~ 23.12.5.	23.12. ~24.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25	25	—	25	(1차) 24.11.11. ~24.12.2. (2차) 24.12.3.~ 24.12.16.	24.12. ~25.6.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형사 법학회

주) 2023년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은 2024년 수행 중 계약이 해지되어 이월된 2,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자료: 대법원

- 「국가재정법」 제72조⁹²⁾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지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구용역비(260목)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92)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없음에도 매년 연도말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인해 연례적으로 정책연구비를 전액 이월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과제담당관이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과제 승인을 거친 뒤 과제담당관이 연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정 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정책연구비의 전액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절차를 감안하여 연도 내 정책연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과제발굴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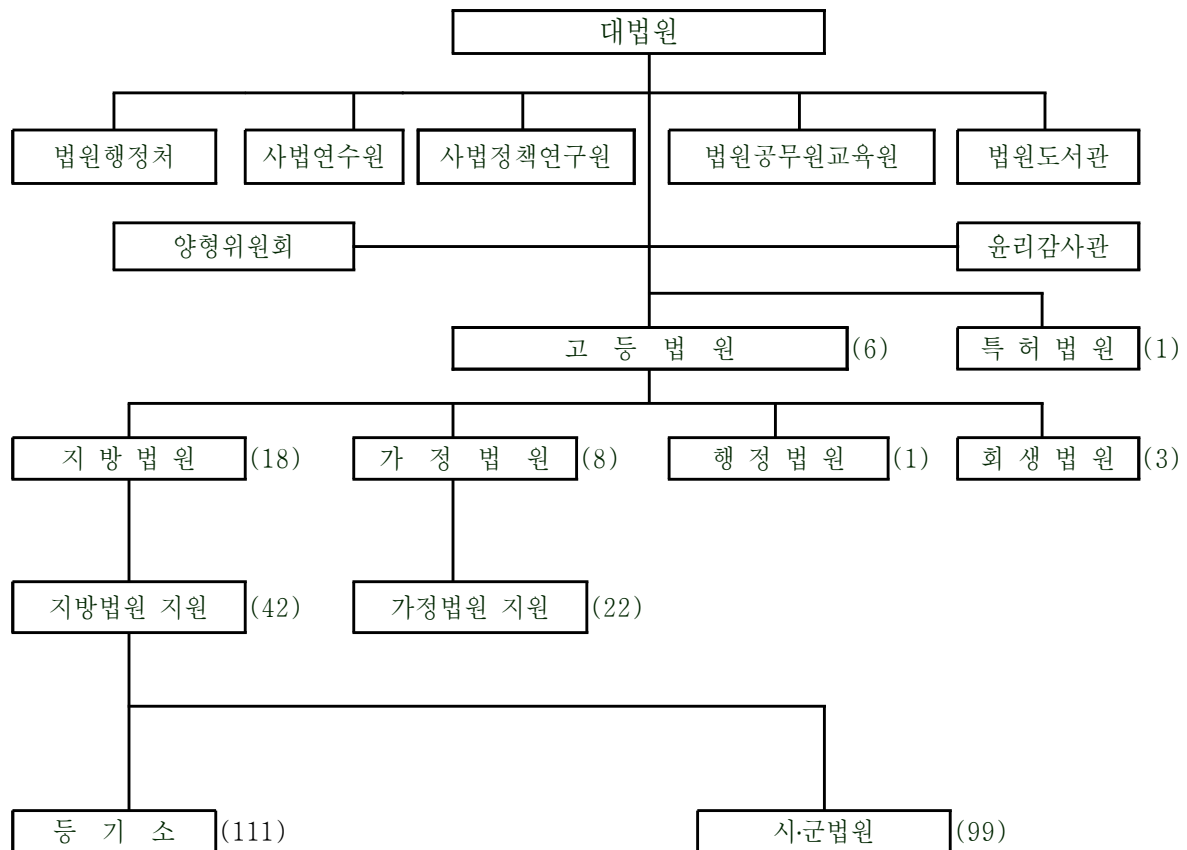
- 참고로, 정책연구비의 이월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연례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연도말 계약 체결 및 정책연구비 전액 이월을 지양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1. 법원 조직도

(2025. 6. 30. 기준)



※ 각급 법원 현황

- 총 법원 수: 102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 1, 회생법원 3, 지법지원 42, 가정지원 22]
- 기관: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 사·군법원수: 99
- 등기소: 111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가. 법 관

(2025. 6. 30. 기준)

구 분 직 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정 원 외 법 관
대법원	대법원장	1	1	—	
	대 법 관	13	13	—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2	2	—	
	재판연구관	100	99	—1	
고 등 법 원	원 장	7	7	—	사법연수원장 : 1
	부장판사	372	52	—14	
	판 사		306*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1 사법연수원 교수 : 14
지 방 법 원	원 장	30	30	—	법원행정처 차장 : 1
	지 원 장	42	42	—	
	부장판사	2,751	1,306	—162	사법연수원 교수 : 13
	판 사		1,283		
미보임 신임법관			1	1	
합 계		3,318	3,142	—176	정원 외 법관(30) 포함 법관 총 수 : 3,172

* 이 중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한 고법판사는 227명임

※ 2025년도 임용 법관 : 4명

- 전담법관 4명

※ 2025년도 퇴직 법관 : 81명

- 고법원장 2명, 고법부장 5명, 지법부장 53명, 고법판사 12명, 판사 9명

나. 법원공무원

(2025. 6. 30.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경력직	일반직		13,627	14,217	590
특 수 경력직	정무직		3	2	-1
	별정직	연수생	2	-	-2
		비서관 등	34	28	-6
		법원보안 관리대원	-	3	3
일반직 또는 별정직			496	526	30
임기제		일반임기제	337	337	-
		전문임기제	717	896	179
합 계			15,216	16,009	793

※ 특정직(법관, 연수원교수등), 청원경찰은 제외

※ 정무직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윤리감사관임

※ 청원경찰 : 정원 40명, 현원 34명(2025. 6. 30. 퇴직자 5명 제외)

※ 2025. 6. 30. 일반직 퇴직자 181명 제외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2023년 1월 ~ 2025년 5월, 단위: 건)

구 분	연도	2025년 5월			2023년			2022년		
	심급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 사 (본안)	접수	328,925	21,226	4,491 (4,491)	805,366	59,475	14,958 (13,026)	780,071	58,703	12,152 (12,150)
	처리	295,037	22,190	7,151 (5,128)	786,085	59,819	26,325 (13,191)	768,886	58,382	14,588 (12,381)
	미제	413,930	51,537	4,254 (3,469)	380,042	52,501	6,914 (4,106)	360,761	52,845	18,281 (4,271)
	상소	19,771	4,353	-	52,942	11,436	-	53,070	11,033	-
형 사 인원수 (공판)	접수	94,480	30,639	12,095	239,981	82,162	24,889	236,981	79,453	21,102
	처리	90,170	32,068	10,458	228,492	80,755	24,044	230,927	74,489	20,419
	미제	136,176	47,894	7,142	131,866	49,323	5,505	120,377	47,916	4,660
	상소	39,105	10,109	-	104,187	24,617	-	104,099	22,301	-
가 사 (본안)	접수	15,591	1,602	234	40,160	4,493	724	40,002	3,972	701
	처리	15,251	1,561	280	39,440	4,345	745	40,517	4,240	701
	미제	26,056	2,843	116	25,716	2,802	162	24,996	2,654	183
	상소	1,161	211	-	3,258	562	-	2,887	549	-
행 정 (본안)	접수	7,961	2,348	1,365	20,878	7,303	4,011	21,953	7,184	3,526
	처리	7,893	2,603	1,882	21,907	7,280	3,634	21,295	6,874	3,677
	미제	16,747	5,266	1,161	16,679	5,521	1,678	17,708	5,498	1,301
	상소	2,254	1,165	-	6,974	3,759	-	6,959	3,383	-

주 : ()내의 수는 동일인에 의한 파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4. 성과지표 현황

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개	2개	2개	-	-	1개	1개	1개 (50.0%)
		100%	-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일반 재정	100.0(%)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목표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법정보화운영	①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1.0	정보화	80.0(%)	정성	결과	

5.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변 상	징 계	
2(1)	9	19(1)	—	—	30(1)

* 합계는 중복 적용된 건수를 포함

* () 안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한 경우 이의 건수를 기재

나.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 중	시정 미이행	
20	9	—	29

다.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1) 시정완료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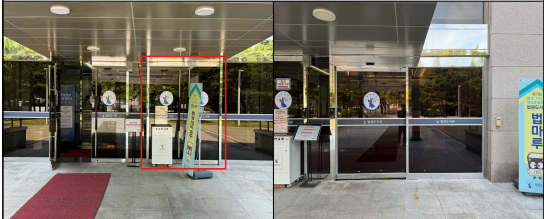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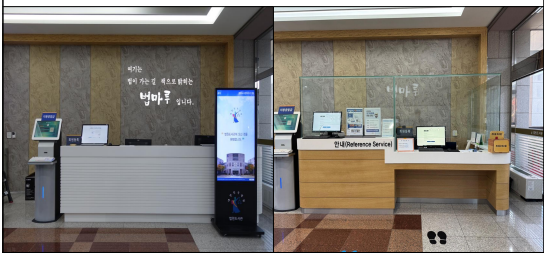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기관의 경우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국선번호료 지원, 가족등록 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등과 같은 일반 사업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음	주의	○ 2025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여 세미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향후 복리후생비를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 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지적사항]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예산 추가 확보시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는 것이 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2024. 7. 이후부터는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2025회계연도 또한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6월 30일
○ [지적사항] '법원정책연구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음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260	주의	○ 2025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제를 2024년 12월까지 선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예산에 해당하는 과제도 연초에 선정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6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지적사항] 2023년 국선번호료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국선번호를 신청한 총 접수 건수는 417,924건으로 전년 대비 38,341건(10.1%)이 증가되었고, 국선번호인 선정 건수는 162,577건으로 전년 대비 16,765건(11.5%)이 증가하였음 ○ 2023년 국선번호료 불용액 4,900만원은 각급 75개 법원에서 일반국선번호료 기본보수액(2023년 기준 50만원) 미만의 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임 ※ 2021~2023년 국선번호료 지급현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접수 건수</th><th rowspan="2">국선번호인 선정건수</th><th colspan="3">국선번호료(백만원)</th></tr><tr><th>예산액</th><th>지급액</th><th>불용액</th></tr><tr><td>2021년</td><td>380,064 건</td><td>140,627건</td><td>61,567</td><td>58,133</td><td>3,484</td></tr><tr><td>2022년</td><td>379,583 건</td><td>145,812건</td><td>61,000</td><td>60,586</td><td>406</td></tr><tr><td>2023년</td><td>417,924 건</td><td>162,577건</td><td>65,334</td><td>65,285</td><td>49</td></tr></table> ○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4항에서 각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국선번호료 지급지연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는 취지는 국선번호인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	구분	접수 건수	국선번호인 선정건수	국선번호료(백만원)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2021년	380,064 건	140,627건	61,567	58,133	3,484	2022년	379,583 건	145,812건	61,000	60,586	406	2023년	417,924 건	162,577건	65,334	65,285	49	제도개선	○ (체계적 예산 배정) 법원행정처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형사사건 통계를 예산 배정에 반영하여 적정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고, 국선번호 관련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예산배정을 하고 있으며 배정 시마다 각급 법원의 배정액, 집행액 및 미집행액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이와 함께 12월 각 법원의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감배정 및 재배정함으로써 국선번호료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규 규정 신설 및 준수 독려) 또한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선번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 따라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2021. 12. 1. 시행). - 각 법원에 대해 국선번호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실시(2024. 5. 8., 형사지원심의관-1895)하여 국선번호료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함 ○ (국선전담변호사 선정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2023년과 2024년 ‘국선전담변호사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연속 시행(2023. 11. 3., 형사지원
구분				접수 건수	국선번호인 선정건수	국선번호료(백만원)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2021년	380,064 건	140,627건	61,567	58,133	3,484																								
2022년	379,583 건	145,812건	61,000	60,586	406																								
2023년	417,924 건	162,577건	65,334	65,285	49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심의관-4006, 2024. 6. 26., 형사지원심의관-2528)함. 이는 일반국선변호료 예산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각 법원에서 결정한 국선전담변호사 월 적정 선정건수(20~35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건수는 2022년 43,208건을 기록한 이래 2023년 44,086건, 2024년 47,276건으로 증가하였음 ○ (국선전담변호사 예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이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등에서의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 요청하여 왔으나,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은 총 예산규모가 2024년 기준 698억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출연규모가 유동적이고 국선변호사건의 증감에 따라 국선변호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관에 신중한 입장이었음. 그러나 최근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건전재정의 기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동참하고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료지원사업 예산 중 고정비로 그 지원규모가 예측가능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를 기금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함. 이에 따라 국선변호료예산은 일반국선변호(일반회계) 및 국선전담변호(기금) 예산으로 구분되어 각 집행될 예정이므로 보다 철저한 집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정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각 법원에 대해 공문,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지연지급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법원의 비품 및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많은 것으로 보임 <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비품 내용연수 도과 현황> <table><tr><th>물품</th><th>내용연수 (년)</th><th>총 개수</th><th>내용연수도과개수 (비율)</th><th>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th></tr><tr><td>법정의자</td><td>8</td><td>13,858</td><td>7,895(57%)</td><td>2,762(20%)</td></tr><tr><td>법정방청석</td><td>9</td><td>9,239</td><td>5,656(61%)</td><td>3,808(41%)</td></tr><tr><td>냉방기</td><td>10</td><td>497</td><td>232(47%)</td><td>52(11%)</td></tr><tr><td>냉난방기</td><td>9</td><td>1,246</td><td>493(40%)</td><td>89(7%)</td></tr><tr><td>디지털 복합기</td><td>6</td><td>2,733</td><td>1,754(64%)</td><td>미산정</td></tr><tr><td>방독면</td><td>7</td><td>13,507</td><td>7,869(58%)</td><td>1,562(12%)</td></tr></table> ○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해야 하고, 반대로 물품의 노후화가 심하면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제고 측면에서 시급히 교체해줄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 및 적극적 집행을 통해, 노후한 법원의 시설 및 비품을 시의적절하게 교체할 것	물품	내용연수 (년)	총 개수	내용연수도과개수 (비율)	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	법정의자	8	13,858	7,895(57%)	2,762(20%)	법정방청석	9	9,239	5,656(61%)	3,808(41%)	냉방기	10	497	232(47%)	52(11%)	냉난방기	9	1,246	493(40%)	89(7%)	디지털 복합기	6	2,733	1,754(64%)	미산정	방독면	7	13,507	7,869(58%)	1,562(12%)	주의	○ 2025년 예산 노후 시설 및 비품 교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합기 렌탈(15억 6천만원), 전화교환시스템 교체(675백만원 증액), 노후승강기 교체(15억 1,300만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음 ○ 향후에도 노후 시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노후 시설 및 비품이 시의적절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물품	내용연수 (년)	총 개수	내용연수도과개수 (비율)	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																																	
법정의자	8	13,858	7,895(57%)	2,762(20%)																																	
법정방청석	9	9,239	5,656(61%)	3,808(41%)																																	
냉방기	10	497	232(47%)	52(11%)																																	
냉난방기	9	1,246	493(40%)	89(7%)																																	
디지털 복합기	6	2,733	1,754(64%)	미산정																																	
방독면	7	13,507	7,869(58%)	1,562(12%)																																	
○ [지적사항]대법원은 매년 초 사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11월·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제도개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①수요예측(사용자 만족도 조사, 배정 세부 계획 등)이 지연되거나, ②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사유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업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사업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마무리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계약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할 것		획 수립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어 발주 공고나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이에 전체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음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세부계획 조기 수립과 추진일정 단계별 점검을 통하여 계약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 선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법원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점자보도블록, 자동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 ○ 법원도서관은 공사비(420-03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잘못 편성하였고,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도 실패하여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할 것	주의	○ 법원도서관은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지막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모두 설치하였고, 권장사항인 장애인 접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음 자동문  전 후 장애인 접수대  전 후 ○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5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600만원은 불용, 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사법연수원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반영한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 계획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심의회를 운영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음.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계획에 맞는 예산안을 구성하였고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에 따른 이전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등기소 이전 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향후 이전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5년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25년 8월에 완공되는 여수등기소 이전비(3,800만원)를 편성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대법원은 동 세부사업에서 세 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제도개선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25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단위: 백만원)					
대상 사업	2024년도 등기정보시 스템유지관 리 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	부동산 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		
원가 계산 용역 금액	6	20	33		
사업 개요	등기응용 정보시스템 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 등 결제·정산 대행	부동산등기 DB서버 3대 교체 및 증설 등		
사업 예산	16,716	징수수수료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사업자에 지급	78.5 (60개월 금융리스로 집행)		
입찰 공고 금액	17,350	8,613	1,389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은 사업예산이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사업금액 산출이 가능했음 ○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은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기성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지 않았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각급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부동산등기 DB서버 성능개선 사업은 1회성 사업으로 향후에는 원가계산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 ○ 향후에도 대법원은 불필요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를 지양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0월 11일(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조치완료일: 2024년 10월 7일(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 사업)
○ [지적사항]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전문가 진단 등의 실시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실행행률이 매년 40% 내외임(2023년 기준 42.9%) ○ 전문가 진단 등은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심리와 처분을 위한 것인				제도개선	○ 집행부진 사유 -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항목은 전문가에 의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함. 23년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물리적 접촉을 요하는 처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데, 2019 ~ 2023년간 대상사건 대비 실시사건 비율을 보면 소년보호사건 47%, 아동보호사건 14.6%, 가정보호사건 14.6%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적정한 심리와 처분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다만, 동 항목의 경우 예산의 집행 여부가 보호소년이나 행위자의 성향 및 정신 질환 유무, 사건의 특수성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재판사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적인 사업의 예산지출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24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 해소로 인하여 23년도에 비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전문가진단 및 아동·가정보호사건에서의 전문가 의견조회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예산소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함으로써 각급 법원이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동 예산항목의 경우 24년도 예산편성 시 23년도 예산 대비 317백만원 감액된 바 있으며, 25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24년도 예산 대비 8백만원 감액되었음. 대법원은 앞으로도 예산 항목의 편성과 집행을 면밀하게 살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동 사업은 기금 지출 구조상 소송구조 지원 사업(1161-301), 조정제도 지원 사업(1161-30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1161-303),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 등과 함께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성과지표로 ‘사건 처리율’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로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국민 대상 사법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사업의 성과와 운영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제도개선	○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되는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사업인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내역사업인 “국민 대상 사법교육”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가 더 잘 전달될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 기존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 처리율’이 ‘전체 접수한 사건수’ 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인 것이 성과달성도가 100%를 초과하여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전체 접수한 사건수와 미제사건수의 합산’ 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로 조정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난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알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보완을 검토할 것		도가 높은 재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예산현액 38억 2,900만원 중 13억 8,700만원만 집행(집행률 36.2%)되고, 23억 8,900만원이 이월(이월률 62.4%)되는 등 예산 집행이 저조함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1차 과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함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과업기간 변경내역	제도개선	○ 2023년 계약 시, 무응찰 유찰 등으로 인한 계약이 지체되었고, 선행 연계사업(차세대 전자소송) 오픈일정 연기(2024. 9. 19. 오픈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됨)로 인한 계약종료기간 연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됨 - 2024. 8. 20.자로 2023년도 이월된 예산(23억 8,900만원) 모두 집행완료 됨 -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8월 20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과업기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		
○ [지적사항]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9월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현재 시스템 개통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음	제도개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후 법원 내·외부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 정보화사업 계약에서도 제안요청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대법원은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LG CNS 컨소시엄)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업 추가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과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예측성·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과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가적 과업이 당초 요구사항 범위 내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대법원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중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분담금 산출은 기존 예산 배정금액 7억 6,500만원 중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도입 일정 지연으로 재산정되어 최종 5억 5,025만원으로 산정되었고 낙찰차액(433만원)을 포함한 집행액은 5억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임(불용률 40.6%)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과업변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견 발생 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발 일정의 준수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비인 관리용역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에 과업범위나 요구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이견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과업변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견 발생 시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임 ○ 2024년도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리용역비 불용률을 대폭 낮추는 등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음 - 2024년 관리용역비 예산 2,495백만원(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일이 연기되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내역변경한 금액 4,792백만원 제외) - 집행액 2,304백만원, 불용액 191백만원, 불용률 8.3% ○ 조치완료일 : 2025년 1. 31.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시 결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결정 기한 준수를 등에 대한 자료 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정 기한 준수율을 높여 형사보상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에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보상결정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은 형사보상결정 지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법원이 보상결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남북귀환어부’ 사건, ‘제주 4.3.’ 사건 등의 보상청구 기한을 어긴 사례가 이미 보도된 바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의 준수율을 관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여 각급 법원에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각급 법원별 형사보상청구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사건처리 소요기간 통계 추출 및 분석 - 최근 5년간 미제건수가 급증한 법원의 미제 증가 원인 분석 - 미제건수가 급증한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사건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 및 사건처리 소요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도별 전국 법원 형사보상청구사건 평균 소요일수 및 소요된 기간별 사건수 통계 추출 및 분석 -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형사보상청구사건 연도별 평균 소요일수,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6개월, 12개월을 초과한 사건수 및 비율 분석 ○ 조치완료일 : 2024년 7월 4일 ○ 형사보상결정기간 준수 요청 공문 발송 - 전국 법원에 형사보상 결정기간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하였고 지연 원인의 분석 등을 통해 법률상 규정된 형사보상 결정기간 6개월 준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7월 5일
○ [지적사항]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작업지침과 달리 사용목적, 집행방식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주의	○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일자별, 세목별 집행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산보고서만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기 어려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하는 회계법인은 작성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적사항]대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지원의 경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임대인도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이 실효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받는 절차가 중단되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게 됨 ○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소송구조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제도개선	○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권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 제외 사유에 대하여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의 경매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 HUG사건이 집중된 법원(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HUG사건 전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경매재판부' 신설 - 위 3개 법원 경매참여관 증원 - HUG와 협력 체계 정비 → 위 3개 법원에 HUG 소속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HUG사건 절차 진행 등 상담 지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21일
○ [지적사항]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인건비: 1억 6,800만원, 공공요금: 4,000만원)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 또는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어학연수나 단기 위탁교육 등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력향상 및 역량강화('23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주의	○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 일반수용비를 이용하였으며 추후 사법부 예산·회계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안에 의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로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국외교육법관에 대한 어학연수비 지원은 법관의 비교법적 연구능력 이상의 전문적인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여 해당 언어권에 기반한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관 주도에 의한 국제규범의 창설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주로 제2외국어권 지역에 파견된 법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실시하였으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라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 해외연수 법관에게는 어학연수비 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력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운영' 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시정	○ 야간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편성액 - 2023년 편성액 8,600만원 중 3,930만원 사용(특수건강진단 종사자 914명, 집행률 45.8%)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함 ○ 대법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바,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실했다는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며,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2024년 편성액 3,000만원으로 삭감(5,600만원 감소) ○ 법령에 따른 집행을 위한 조치 - 2023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사업 집행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후생담당관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로 변경, 특수건강진단 수검 독려 - 2024년 전국법원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독려 공문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규칙 제201조에 따른 검진대상자 범위 특정 안내) ·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자 1,091명(야간영장 132명, 법원보안 295명, 공무원 664명) - 2024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점검 ○ 2024년 편성 및 집행 현황 - 편성액 3,000만원 - 집행액 4,700만원(복지후생비 1,700만원 재배정) ○ 조치 완료 여부 - 2024년부터 전국법원에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자 특정 및 진단 실시 독려 공문을 시행하고, 그 실시 여부에 대한 상·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함 -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집행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 요청 ○ 조치완료일 - 2024. 12. 2.(2024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완료일)
○ [지적사항]대법원은 세부사업‘사법업무 진상화 사업’으로 연간 45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소송제기건수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 2023년 예산현액 451억 3,100만원, 집행	제도개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및 예규 제8조에 따라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란)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제기 사실을 공고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액 428억 8,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9,600만원, 불용액 6억 4,900만원임 - 법원행정처에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현황 확인을 위한 소송제기 건수 및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 ○ [시정요구사항] 법원은 전산화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		○ 그러나 담당자의 착오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잘못하였고, 이후 재차 확인 후 해당 의원실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였음 ○ 사법전산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의 분석에 도움 되는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음 ○ 사법전산화 시스템이 국민의 재판편의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축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 시정중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북한의 해킹조직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이 소장한 자료는 개인 신원 및 재정 상황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계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하여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계,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것	주의	○ ‘2026년-2026년’ 사법부 보안관계 사업에 대한 여러 보안관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25. 5. 21.(수) ‘사전 사업설명회’ 진행을 준비함 ○ 2025년 4월부터 ‘보안위협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보안 담당업무를 세분화하였고 4월 전산사무관 1인, 5월 보안전문가(일반임기제 7호) 1인, 2025년 하반기까지 보안전문가(일반임기제 6호) 1인을 전담팀에 충원하여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안 지침의 전면 개정과 하위 가이드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대법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전용·세목조정(이하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액 39억 9,500만원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세목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함	제도개선	○ 향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회계시스템 개편 추진으로 개선중이며, 이·전용 등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각 사업의 부족한 예산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이·전용 등은 재원을 보내주는 다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에 의해 향후 소요분만큼 이루어져야 하나, 일선 관서에서는 공공요금이 남아 공공요금을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지적사항]대법원은 「점자법」의 개정 에 따라 점역을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점역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였으나, 점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으로 수행됨에 따라 2023년 7월 1건의 점자 문서만 제공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점자 문서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 ‘넓은 마을’에 점자 문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할 예정임 -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단체 소식지, 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홍보활동을 계속하겠음 - (내부) 홍보가 다소 미진하여 점역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으므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점역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4. 25. 개최된 전국 등기과·소장회의에서도 등기소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요청하였음 -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공탁금 보관은행을 신규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재지정하는 경우 공개	제도개선	○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이 신설되거나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 있음 ○ 보관은행별로 출연율(공탁금 평균 잔액 대비 출연액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출연율 등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보관은행 지정에 반영하는 경우 기금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기준에는 ①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②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③ 민원인 이용 편의성 등이 포함될 뿐 출연율 등 수익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기준에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반영할 것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심의 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방 권역별로 1~2곳의 비교적 공탁금 잔고 규모가 큰 법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0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한 보관은행을 선정하였음 ○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2024. 11.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회의의 후속 절차로써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 결과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탁출연금 상·하한제 폐지 및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 안건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은행 보호 및 은행 간의 과당경쟁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기준에 사전출연제를 도입하는 안건은 추가검토하기로 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2025. 2. 개정하여, 2025년 공탁출연금 산정시부터 적용함 - 2025년 공탁출연금 산정 결과 2024년 공탁출연금 대비 1,103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2024년 출연금 141,550,000,000원 ⇒ 2025년 출연금 251,918,000,000원)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형식으로 「공탁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협의 중임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적정한 출연금 산정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국민참여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대상사건 대비 신청사건 비율은 통상 5%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사건 21,483건 중 3.14%인 674건만이 신청되었음 ○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르는 수준으로(2023년도 기준 31.0%), 그 결과 2023년에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95건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홍보, 신청주의 수정, 당사자 신청에 대한 배제기준 마련 및 각 법원별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	제도개선	○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사법참여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 중임 - 2022년과 2023년 전국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원·검찰·변호사·지역 언론 등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2020. 11.)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980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2025. 4. 14.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추진 중임 ○ 2024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우수재판부 연수, 우수법원 선정·포상,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 지속 시행 중 ○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매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홍보방안·홍보매체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최근 3년 동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정책연구비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어긋남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계약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계약기간</th><th>주 제</th></tr><tr><td>2021년</td><td>29</td><td>-</td><td>29</td><td>'21. 12. ~ '22. 9.</td><td>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td></tr><tr><td>2022년</td><td>24</td><td>-</td><td>24</td><td>'22. 8. ~ '23. 2.</td><td>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td></tr><tr><td>2023년</td><td>24</td><td>-</td><td>24</td><td>'23. 12. ~ '24. 6.</td><td>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	구 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주 제	2021년	29	-	29	'21. 12. ~ '22. 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	2022년	24	-	24	'22. 8. ~ '23. 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2023년	24	-	24	'23. 12. ~ '24. 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주의	○ 국민참여재판 사업의 조사연구가 매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출을 차년도에 이월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한된 주제와 부족한 계획액(25백만원)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는 연구수행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임 ○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국민참여재판의 조사연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비 등과 통합하여 적시성 있는 주제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사법참여 증진을 위한 핵심 제도로써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통합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민참여재판 조사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구 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주 제																					
2021년	29	-	29	'21. 12. ~ '22. 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																					
2022년	24	-	24	'22. 8. ~ '23. 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2023년	24	-	24	'23. 12. ~ '24. 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과다 예측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도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규모를 결정하는 매년 연말 세입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함 ○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0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112억원(6.6%)만 집행하고 369억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등기특별회계의 전출)은 예산현액 대비 6.6%의 수납률을 보였음 - 국회는 2018년도,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과다 추계되어 연례적인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연말까지의 총세입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시정 제도개선	○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을 하되, 필요시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의 감소로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어 잉여금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잉여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등기특별회계</th><th colspan="2">세입</th><th colspan="2">세출</th><th rowspan="2">비고</th></tr><tr><th>전년도 세계잉여금</th><th>순수세입</th><th>일반회계 전출금</th><th>순수세출</th></tr><tr><td>2021년</td><td>77,897</td><td>275,549</td><td>29,181</td><td>250,580</td><td>순세입 > 순세출 잉여금 24,969, 전출금 29,181</td></tr><tr><td>2022년</td><td>73,685</td><td>243,622</td><td>0</td><td>249,256</td><td>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5,634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td></tr><tr><td>2023년</td><td>68,050</td><td>233,052</td><td>11,176</td><td>253,028</td><td>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19,976, 전출금 11,176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각 충당</td></tr><tr><td>2024년 (예상)</td><td>36,899</td><td>226,009</td><td>0</td><td>251,530</td><td>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25,521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예정</td></tr><tr><td>2025년 (예상)</td><td>11,378</td><td></td><td></td><td></td><td></td></tr></table> -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일반회계 전출금’을 존중하기 위하여 25년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은 306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을 통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입이 확충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등기특별회계	세입		세출		비고	전년도 세계잉여금	순수세입	일반회계 전출금	순수세출	2021년	77,897	275,549	29,181	250,580	순세입 > 순세출 잉여금 24,969, 전출금 29,181	2022년	73,685	243,622	0	249,256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5,634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2023년	68,050	233,052	11,176	253,028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19,976, 전출금 11,176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각 충당	2024년 (예상)	36,899	226,009	0	251,530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25,521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예정	2025년 (예상)	11,378				
등기특별회계	세입			세출		비고																																				
	전년도 세계잉여금	순수세입	일반회계 전출금	순수세출																																						
2021년	77,897	275,549	29,181	250,580	순세입 > 순세출 잉여금 24,969, 전출금 29,181																																					
2022년	73,685	243,622	0	249,256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5,634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2023년	68,050	233,052	11,176	253,028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19,976, 전출금 11,176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각 충당																																					
2024년 (예상)	36,899	226,009	0	251,530	순세입 < 순세출 부족한 사업비 25,521 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예정																																					
2025년 (예상)	11,378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시정)		도 확대가 되리라 예측됨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법원 소관 보관금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과 「법원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른 법원보관금이 포함되는데, 공탁금의 경우 그 운용수익금이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회수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운용수익금이 법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음 ○ 2023년 말 현재 법원보관금 잔액은 2조 63억원으로, 그 운용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였고, 법원보관금 업무는 공탁금 업무와 비교하여 예치기간이 짧고, 소액거래 비중이 많은 반면, 거래건수는 많아 업무원가가 많이 소요되어 공탁금 운용수익에 비하여 그 운용수익이 크지 않아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에 대한 출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보관은행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에 대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면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 여부에 대하여 공탁법에 근거를 둔 공탁출연금과 같이 법원보관금 운영수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출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근거(공탁법 개정 등)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됨 ○ 이와 관련하여 2024. 11.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형식으로 「공탁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협의중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적정한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2023년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징계부가금 10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되었음 ※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 증거 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징수 결정 액(B)</th><th rowspan="2">수납 액 (C)</th><th rowspan="2">수납 률 (C/A)</th><th rowspan="2">수납 률 (C/B)</th><th rowspan="2">미수 납액</th><th rowspan="2">불납 결손 액</th></tr><tr><th>본 안</th><th>추경 A)</th></tr><tr><td>2020</td><td>-</td><td>-</td><td>-</td><td>-</td><td>2,375</td><td>15</td><td>-</td><td>0.6</td><td>2,361</td><td>-</td></tr><tr><td>2021</td><td>-</td><td>-</td><td>-</td><td>-</td><td>1,110</td><td>10</td><td>-</td><td>0.9</td><td>1,100</td><td>-</td></tr><tr><td>2022</td><td>-</td><td>-</td><td>-</td><td>-</td><td>1,109</td><td>49</td><td>-</td><td>4.4</td><td>1,060</td><td>-</td></tr><tr><td>2023</td><td>-</td><td>-</td><td>-</td><td>-</td><td>1,060</td><td>-</td><td>-</td><td>-</td><td>1,060</td><td>-</td></tr></table> ○ 징계부가금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시부터 세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게 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편성을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절차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연도	예산액		이체 증거 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 액(B)	수납 액 (C)	수납 률 (C/A)	수납 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 액	본 안	추경 A)	2020	-	-	-	-	2,375	15	-	0.6	2,361	-	2021	-	-	-	-	1,110	10	-	0.9	1,100	-	2022	-	-	-	-	1,109	49	-	4.4	1,060	-	2023	-	-	-	-	1,060	-	-	-	1,060	-	제도개선	○ 징계부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입 규모와 추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부가금은 그 발생 원인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수입 규모와 추이를 예상하기 곤란하며 징계받은 자의 수납 일시가 일정치 않고, 수납액이 매해 소액인 점 등 세입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려움 ○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 징계부가금 채권 관리 안내 공문을 실시하여, 징계부가금 징수절차 및 소멸시효 중단 조치 안내하였음 ○ 향후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미수납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요청을 의뢰하는 등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연도		예산액										이체 증거 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 액(B)	수납 액 (C)	수납 률 (C/A)	수납 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 액																																								
	본 안	추경 A)																																																									
2020	-	-	-	-	2,375	15	-	0.6	2,361	-																																																	
2021	-	-	-	-	1,110	10	-	0.9	1,100	-																																																	
2022	-	-	-	-	1,109	49	-	4.4	1,060	-																																																	
2023	-	-	-	-	1,060	-	-	-	1,060	-																																																	

